

04

## Focus On Media

미투 이후 남겨진  
언론 보도와 인격권 문제

50

##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블록체인요? 일단 스팀잇 계정부터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62

## 주목할 만한 해외언론법제

한국 개인정보보호법과의  
비교를 통한 EU GDPR의 이해



## 언론중재

2018 Summer Vol.147

### 인쇄

2018년 6월 26일

### 발행

2018년 6월 30일

### 등록

1981년 10월 14일

### 등록번호

서울중,바 00002

### 발행인

양인석

### 편집인

권오근

### 발행

언론중재위원회(www.pac.or.kr)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 전화

02-397-3114

### 디자인·인쇄

문화공감

### 편집위원

민영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심우민 경인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이성규 미디어티 미디어테크랩장

\* 본지는 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게재된 원고의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에 수록된 글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FOCUS ON MEDIA

미투 이후 남겨진 언론 보도와 인격권 문제

1. 시정권고 결정 사례를 통해 본 04  
미투보도 실태

– 성기준 언론중재위원

2. 미투보도 속 우리가 놓친 것: 20  
한·미 보도 비교를 통해

– 남지원 경향신문 정책사회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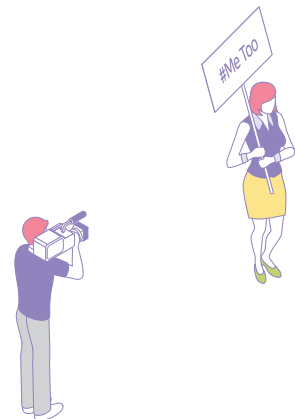
3. 미투운동의 걸림돌, 사실적시 32  
명예훼손죄를 둘러싼 쟁점과 개선 방안

– 손지원 변호사

## 칼럼

‘글로벌생활자’로 사는 7가지 법칙 46

– 손관승 언론중재위원



##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블록체인요? 일단 스팀잇 계정부터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 김동현 민중의소리 뉴미디어국장

50

## Journalism & Ethics

언론보도에 이해관계가 개입할 때

- 임영호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72

## 판례토크

민사판결의 사실 인정과  
허위의 사실 적시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8

## 특별기고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제도 운용의  
경제적 가치 평가

- 조준원 언론중재위원회 전문위원

김진하 언론중재위원회 조사관

76

## 주목할 만한 해외언론법제

한국 개인정보보호법과의  
비교를 통한 EU GDPR의 이해

- 박노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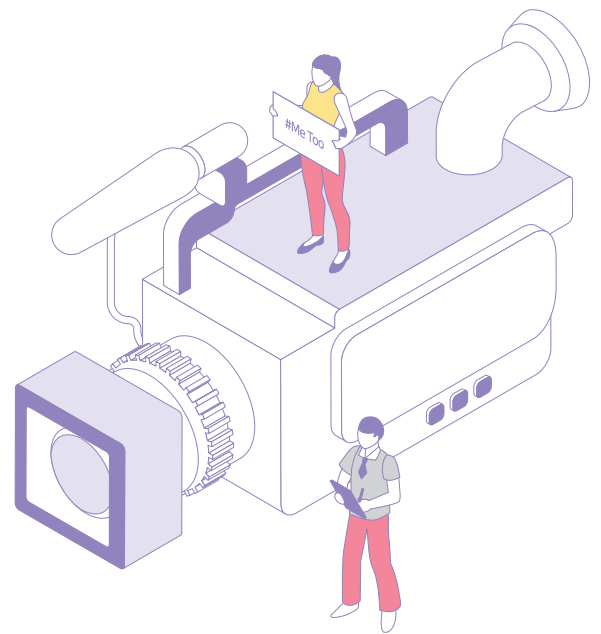
## 해외통신원

국가 기관의 반론권(Right to reply)과  
언론 자유의 경계

핀란드 언론의 두 사례를 통해

- 최원석 핀란드 라플란드대학 미디어교육 석사 과정

90



# 01

---

## 시정권고 결정 사례를 통해 본 미투 보도 실태

성기준 언론중재위원

---



## 1. 문제 제기

“끝으로 이 일과 관련해 많은 언론사에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피해자라는 사실은 잊었는지 계속해서 더 자극적인 증언만을 이끌어내려는 기자분들의 태도가 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무엇을 위한 취재이고, 누구를 위한 언론인지요. 언론 또한 피해자를 또 다시 숨게 만드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투(#Me Too)에 나선 한 여성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폭로한 직후 언론들로부터 ‘집요한 취재 공격’을 당하자 이런 글로 2차 피해를 호소하며 자제를 요청했다. 미투보도와 관련한 우리 언론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글이다. 언론은 기억 자체가 고통인 과거의 상처를 자신의 이름까지 내걸고 폭로한 여성의 2차 피해를 우려하거나 배려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저널리즘 원칙과 상업주의에 파묻혀 피해자 인격권을 서슴없이 침해한 것이다.

지난 1월 말 현직 검사의 폭로 인터뷰로 시작된 미투운동은 삼시간에 범조계를 넘어 문화 예술계, 학계, 정·관계, 기업 등으로 확산되면서 일부 남성들의 비뚤어진 성(性) 윤리와 가치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폭로 내용도 충격적인 데다 일부 가해자들은 대중적 인기를 누리던 유명인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이중적 처신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이 객관성과 정확성을 앞세워 미투의 확산에 긍정적 기여를 한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언론은 객관성을 빌미로 미투 폭로를 피해자와 가해자 간 진실 공방으로 몰아가기도 했다. 피해자 신상 공개는 물론 당사자의 고통을 흥미 위주의 선정적 보도로 이끌면서 미투의 본질을 비껴가고, 극단적인 경우 엄연한 범죄행위를 성애화와 희화화했다는 책임에서 언론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성범죄 사건 보도가 섯길로 빠지는 것을 막고자 언론·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성범죄 취재보도 가이드라인과 실천요강을 만들고 운용해왔으나 이번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와 공익성을 ‘전가의 보도’처럼 앞세워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올리는 보도가 봇물을 이룬 것을 보면 말이다.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가 성폭력·성희롱을 낳는 사태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이를 뜯어고치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은 찾아보기조차 쉽지 않았다. 오히려 독자들의 말초적 관심을 자극하는 선정적 애깃거리를 엮어내는 데 열을 올렸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클릭 수를 늘리고 봐야하는 상업주의에 매몰된 현실과 성범죄 사건 보도에 대한 기자와 언론사의 인권의식 결여가 잘 맞물린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인격권 보호와 언론 자유 간에 필요 이상의 긴장관계가 지속돼 보도행위에 대한 ‘위축효과’<sup>1)</sup>

1) 황용석 (2014. 12. 15.), 구원파와 언론중재 ‘폭탄’. 〈한겨레〉, URL: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 참조.

가 나타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할 일이지만 언론이 미투운동 과정에서 위축은커녕 여러 형태의 인격권 침해 보도로 저널리즘의 본분을 스스로 훼손한 점은 분명히 되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한국방송학회와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가 지난 3월과 4월에 각 개최한 미투 보도 긴급토론회에서 언론의 각성을 촉구하고 개선책을 논의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토론회에서도 미투보도의 선정주의와 정파적 시각, 전통적 뉴스가치에 따른 역기능과 같은 문제점들이 당연히 부각됐다. 독자 확보라는 언론의 숙명적 특성에 따른 기회비용이긴 하지만, ‘2차 가해나 선정성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sup>2)</sup>는 지적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서울YWCA도 비슷한 시기에 미투보도 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해 윤리기준을 위반한 사례를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했다. ① 피해자 신상 노출과 ② 가해자 입장만 대변하는 보도, ③ 미투운동에 대한 부정적 묘사, ④ 성폭력을 사소화하는 표현, ⑤ 선정성을 부각한 낚시성 제목, ⑥ 성폭력 상황을 필요 이상 상세하고 선정적으로 표현한 보도 등이다.<sup>3)</sup> 가장 최근엔 6월 7일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가 언론계와 여성단체, 학회, 법조계 인사들의 자문을 구해 ‘성폭력·성희롱 사건, 이렇게 보도해 주세요!’라는 소책자를 만들어 전국 언론사에 배포했다. 2차 피해를 양산하는 일부 미투보도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고 취재와 보도 시 유의할 점을 여러 유형으로 정리하고, 항목마다 그릇된 보도사례를 구체적으로 넣어 기자들의 이해를 돕고 향후 기사 작성에 반영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미투 이후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소위원회(이하 시정권고소위)의 심의 레이더도 분주하게 가동됐다. 심의기준을 벗어난 미투보도가 폭증했다고 봐야 할 정도로 늘었기 때문이다. 시정권고소위는 성범죄 사건을 포함해 평소에도 신문과 방송, 통신, 인터넷매체, 정기간



2) 이재국 (2018. 3. 23.), 한국방송학회 ‘언론의 미투보도, 그 바람직한 방향’ 세미나 기초발제문 참조.

3) 황경희 (2018), 무분별한 보도로 2차 피해, 언론의 성찰이 필요하다. <월간 한국YWCA>, 4월호, 14-15.



행물 등의 보도 내용을 심의해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면 이를 제작한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시정권고소위는 특히 선정적 보도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2차 피해를 낳고 있으며, 이는 결국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도 나쁜 영향을 줘 사회적 법익까지 침해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헌법은 언론 자유를 보장하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나 사생활 등 인격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시정권고소위는 헌법 정신과 형법,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등 17개 실정법의 관련 조항과 제정 취지를 반영해 마련된 심의기준에 따라 미투보도 실태를 면밀히 주시해왔다. 특히 미투 피해자 보호에 철저하고자 언론이 성폭력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죄수법 등을 자세히 다룰 경우 가차 없이 시정권고를 내리는 등 인격권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

사회적 법익 침해 금지와 관련해 시정권고 심의규정에 따르면 언론이 공익을 앞세워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심의규정은 범죄모사에 있어서 음란성과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거나 성행위를 현저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내용은 보도의 의도와는 달리 모방범죄 및 독자들의 충격과 혐오감 유발 등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런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시정권고소위는 미투보도 이후 지난 5월 말 기준 총 149건의 위반 기사를 적발해 해당 언론사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중재위원 겸 시정권고소위 위원인 필자는 이를 계기로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진 사례를 4가지로 유형화해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그러기에 앞서 심의기준이라는 고정된 틀이 있기에 언론관련 시민단체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분류한 미투보도 양태와는 다를 수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아울러 시정권고 조치된

미투보도의 양상을 살펴보면서 인격권 침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저널리즘 본분과 인권 감수성을 언론에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미투운동의 올바른 전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 2. 시정권고 결정 사례의 유형화와 매체별 현황

### 1) 미투운동을 전후한 시정권고 실태

미투보도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며 피해를 증언했고, 사건발생 시점과 폭로 시점 간 시차가 크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 보도와 다른 측면이 있다.<sup>4)</sup> 우리 사회에서 미투운동의 전례가 없었던 만큼 종전까지는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의 보도가 심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시정권고를 결정해왔고, 사례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올해 들어서는 미투운동의 확산으로 사건의 발생 시기와 관계없이 시정권고 결정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게 특징이다.

〈표 1〉은 올해 미투보도 시정권고와 관련해 고려된 조항들의 연도별 적용 현황이다. 미투운동 이전인 2017년까지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신원 공개 또는 범죄수법 상세 묘사로 피해자의 인격권 등 개인적 법익을 침해해 시정권고를 받은 사례는 아예 없거나 그다지 넓지 않은 범위 안에서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2016년의 경우, 그 전까지는 전무했던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가 20건에 이르렀다.

〈표 1〉 '미투보도 관련 시정권고 기준' 연도별 적용 현황

(단위 : 건)

| 연도   | 구분 | 침해유형         |                   |           |        |
|------|----|--------------|-------------------|-----------|--------|
|      |    | 개인적 법익 침해    |                   | 사회적 법익 침해 |        |
|      |    |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 성폭력 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 범죄수법상세묘사  | 성관련 보도 |
| 2013 |    |              |                   | 31        |        |
| 2014 | 5  |              |                   | 51        | 4      |
| 2015 |    |              |                   | 16        | 8      |
| 2016 | 20 |              |                   | 22        | 5      |
| 2017 |    |              | 27                | 2         | 1      |
| 2018 | 7  |              | 143               | 10        | 7      |

(2018년의 경우 4월 말 기준임)

\* 비고 : 사회적 법익 침해 유형 중에 '범죄수법 상세 묘사'는 성범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일반 범죄사건을 포괄한다.

4) 한국방송학회 (2018, 3월), 〈언론의 미투보도, 그 바람직한 방향〉, 서울: 목동 방송회관



이는 그 해 6월 발생한 '섬마을 집단 성폭력'이라는 충격적 사건을 보도하면서 언론들이 사건발생 장소와 피해자의 직업, 나이까지 앞 다투어 공개해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피해자 신원을 추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무더기로 위반했다.

사회적 법익 침해 유형에서는 일반 사건의 범죄수법을 상세히 묘사할 경우, 충격과 혐오 감뿐만 아니라 모방 범죄의 우려가 있기에 시정권고를 내린다. 51건의 시정권고를 기록한 2014년의 경우 다양한 일반 범죄의 수법을 상세하게 보도해 심의기준을 어겼다. 2차 피해의 우려가 큰 성폭력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보도해 시정권고를 받은 사례는 2017년 이전엔 단 한 건도 없었으나 2017년엔 갑자기 27건을 기록했다. 특정 프랜차이즈업체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터져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자 당시 언론은 추행 정황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까지 상세하고 자극적으로 묘사해 피해자에게 수치와 모멸감을 주는 등 2차 가해의 사례가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다.

미투운동이 활발했던 지난 2~4월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로 시정권고를 받은 사례는 미투보도가 아닌 건을 포함해 7건이었고, 미투 가해자의 범죄수법 묘사로 인한 시정권고만 무려 1백43건에 이르렀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시정권고 사례를 기록했던 2017년의 27건에 비해 6배에 이르는 양이다. 미투운동이 현재진행형 사안임을 감안할 때 올해 인격권 침해로 인한 시정권고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 2) 시정권고 결정 사례의 유형화

미투운동 이후 지난 3월 첫 시정권고소위에서 내려진 전체 시정권고 건수는 총 142건이었다. 이 중 미투보도가 112건(78.9%)을 차지해 이 분야에 심의가 집중되었다해도 과언이 아

〈표 2〉 미투보도 시정권고 현황

(단위: 건)

| 회차 | 구분              |                | 침해유형                         | 매체유형 |       |
|----|-----------------|----------------|------------------------------|------|-------|
|    | 미투보도<br>시정권고 건수 | 성폭력<br>피해자신원공개 | 성폭력 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br>/성관련 보도 | 뉴스통신 | 인터넷신문 |
| 1차 | -               | -              | -                            | -    | -     |
| 2차 | -               | -              | -                            | -    | -     |
| 3차 | 112             | 2              | 110                          | 7    | 105   |
| 4차 | 36              | 3              | 33                           | 2    | 34    |
| 5차 | 1               |                | 1                            |      | 1     |
| 계  | 149             | 5              | 144                          | 9    | 140   |

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폭력 사건 보도의 지축을 흐든 미투운동은 1월 말 시작 됐기에 통상 전월의 심의기준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회의가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1차(1월, 256건), 2차(2월, 114건) 회의에서는 심의대상에 오른 미투보도가 없었다.

미투보도가 쏟아진 3차 회의 기간에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 심의기준을 다양하게 위반했기에 유형별 분류가 가능했다. 공통점은 역시 피해자 신원 공개와 선정적 보도 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다.

3차 회의에서 시정권고가 내려진 미투보도를 4가지로 유형화하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표 3〉 미투보도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 회차 | 침해유형                            | 구분   | 건수 |
|----|---------------------------------|--|----|
| 3차 | 성폭력 가해자<br>범행수법 등 묘사<br>/성관련 보도 |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부각하여 보도   | 2  |
|    |                                 | 성폭력 피해자의 인터넷 게시물 전문 게재하는 등 가해자의 범행수법을 자세히 묘사하고 선정적으로 보도  | 58 |
|    |                                 |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을 자세히 묘사하고 제목 등을 통해 선정적으로 보도  | 50 |
|    |                                 |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간 메신저 내용을 재구성하여 가해자의 범행수법을 자세히 묘사하고 선정적으로 보도   | 2  |
|    | 계                               | 112  |    |
| 4차 | 성폭력 가해자<br>범행수법 등 묘사<br>/성관련 보도 |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공개   | 3  |
|    |                                 | 성폭력 피해자의 인터넷 게시물 전문 게재하는 등 가해자의 범행수법을 자세히 묘사하고 선정적으로 보도  | 27 |
|    |                                 |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을 자세히 묘사하고 제목 등을 통해 선정적으로 보도  | 6  |
|    | 계                               | 36   |    |
| 5차 | 성폭력 피해자 보호<br>/성관련 보도           |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수영복 차림의 바둑 두는 사진을 함께 게재하였음, 또한 독자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함. | 1  |
|    |                                 | 계  | 1  |

같이 ① 피해자 실명, 나이, 학력, 직업 등 신원을 부각하여 보도한 사례(2건) ② 피해자가 SNS에 올린 폭로글 전문을 게재해 가해자 범죄수법을 상세하고 선정적으로 묘사한 사례(58건) ③ 특정 신체부위명과 성적 발언 등을 제목에 사용해 선정성의 극치를 이룬 사례(50건) ④ 가해자와 피해자 간 메신저 대화내용을 여과 없이 재구성해 외설이나 다름없이 보도한 사례(2건) 등 112건이다.

네 가지 유형의 시정권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가해자는 성폭력 가해 의혹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탤런트 조민기씨와 극단 연희단거리패 대표를 지낸 밀양연극촌 예술감독 이운택씨, 시인 고은씨, 영화감독 김기덕씨, 영화배우 조재현씨 등이다. 이들 모두 지명도가 높은 유명인들인 만큼 일부 언론은 4가지 유형의 심의기준 위반 영역을 이곳저곳 넘나들며 자극적인 보도로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해 왔다. 또한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는 심의기준(제13조)을 어기고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위배되는 내용을 기사화해 언론의 기본 윤리마저 지키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4차 시정권고소위에서는 미투보도가 절정에 이르렀던 3월보다는 미투관련 심의 건수와 위반 결정사례가 한풀 꺾였다.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3건)와 피해자의 인터넷 게시물 전문 게재 등 범행수법의 자세한 묘사와 선정적 보도(27건), 제목 등을 통한 선정적 보도(6건) 행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5차 회의에서 시정권고를 받은 미투보도는 1건이었다.

### 3)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시정권고소위는 5월 말 기준 일간신문 133종, 주간지 40종, 월간지 19종, 뉴스통신 22종, 인터넷신문 2,178종 등 모두 2,392종의 미디어를 심의대상 매체로 선정해 심의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의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매체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표 4〉의 미투보도와 관련해 심의기준을 위반한 매체별 유형을 살펴보면, 올 들어 5차 회의까지 전체 149건 중 인터넷신문이 146건, 97.9%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 숫자만큼이나 양적으로도 무분별한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다.

〈표 4〉 2018년 제3·4·5차 시정권고소위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단위: 건)

| 구분                  | 일간지 |    | 주간지 | 월간지 | 뉴스통신 | 인터넷신문 | 방송 | 계   |
|---------------------|-----|----|-----|-----|------|-------|----|-----|
|                     | 중앙  | 지역 |     |     |      |       |    |     |
|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성 관련 보도 |     |    |     |     | 3    | 146   |    | 149 |
| 계                   | 0   | 0  | 0   | 0   | 3    | 146   | 0  | 149 |

### 3. 시정권고 사례로 본 인격권 침해

#### 사례1) 성폭력 피해, 가족 신상까지 공개해야 하나?

시정권고 심의기준(제4조, 성폭력 피해자 보호)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언론이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2, 3차 피해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미투운동의 경우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실명으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한다는 점이 일반 성범죄 사건과는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사생활과 신상까지 내키는 대로 쓰도록 언론에 허용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피해자들이 이름을 걸고 폭로에 나선 것은 뒤늦게라도 가해자들에게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아 우리 사회에 좀 더 밝고 건전한 성(性) 의식과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것임에도 언론은 이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

예컨대, 인터넷 중부일보는 ‘조민기 성추행 정황 폭로한 ○○○은 누구?...올해 □□대 △△학과 졸업→○○데뷔’라는 제목 아래 텔런트 조민기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피해자의 이름은 물론 출신 대학과 학과, 학번, 나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 상세하게 보도했다. 인터넷 헤럴드경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은 누구? 갑론을박...진실은?”이란 제목 아래 피해자가 정말 ‘미투폭로’의 당사자인지를 놓고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한창이라며 피해자 실명과 함께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의 출생년도, 나이, 학력 등을 추측 보도해, 관련 보도를 미투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흥미 위주의 가십성 기사거리로 전락시켰다.

배우 조재현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터지자 피해자를 자처하는 전직 여배우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내가 너 언제 터지나 기다렸지”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것이 화제가 되자 울산종합일보와 인터넷 경북신문, 인터넷 일간리더스 경제신문 등은 당사자 동의 없이 이미 오래 전에 결혼해 현재 베트남에 거주 중인 피해자의 실명과 나이, 초상, 학력, 직업을 공개해 인격권에 손상을 준 것은 물론 이 사안과 전혀 무관한 배우자의 이름까지 언급해서 피해자 가족의 사생활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피해자가 공인이더라도 미투 폭로의 경우에는 사안의 심각성과 파장, 인격권 침해 등의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언론은 신원 공개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피해자가 공인이 아닌 일반인일 경우에는 당사자 자신도 보도의 후폭풍이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도에 더욱 신중해야 함은 저널리즘의 기본 윤리이기도 하다.

## 사례2) 성폭력 폭로글 전문 게재, ‘알 권리’인가 ‘옐로 페이퍼’인가

미투보도 중에서 이 심의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SNS를 통해 성폭력 피해 정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는 비록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피해의 사실관계를 객관화해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첫째, 가해자가 거짓진술하거나 사건을 호도하려는 일을 막고 둘째, 언론이 이를 인용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진실에 가깝도록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도하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입맛은 달랐다.

열거하기조차 쉽지 않은 신생 인터넷신문은 물론 지명도가 있는 매체마저도 폭로글 전문을 여과 없이 게재함으로써 ‘생각도 철학도 없는’ 선정 보도의 증폭기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탤런트 고 조민기씨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하면서 피해 정황을 SNS에 상세하게 올린 피해자의 게시글 전문을 그대로 게재해 가해자의 범행수법을 자세히 묘사하는 바람에 보도는 자연스럽게 자극적·선정적으로 흘렀다. 연출가 이윤택씨의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케이스도 마찬가지. 모 극단의 대표가 연희단 거리패의 단원 시절 ‘절대 겁’인 이씨의 안마 요구를 받고 성추행 당한 구체적인 정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Me Too 해시태그와 함께 장문의 글로 올렸으나 언론은 중계방송식 스트레이트 기사 말미에 이를 전문 게재해 2차 가해에 앞장섰다. 모 방송국 공채 출신 개그맨의 성폭력을 고발한 피해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과 익명의 피해자가 현역 아이돌 가수의 성폭력 사건을 고발한 글 또한 선정성 경쟁을 벌이듯 무삭제 게재돼 시정권고를 받았다.

피해자 대부분은 저널리즘의 속성과 보도의 파급력을 잘 모르고 있다. 그렇기에 피해자들은 성폭력 당시의 정황을 사실 그대로 알려야 미투운동의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은 편집이라는 최소한의 윤리적 역할이



나 사안의 본질은 외면한 채 가해자의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나 행동까지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흥미 위주의 무책임한 보도에 치중했다. ‘알 권리’ 충족이란 명목으로 말이다. 피해자들은 언론인이 아니기에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에 맞춰 글을 써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올린 SNS글을 인용보도할 때는 수위와 표현을 다듬어서 보도해야 하는 게 언론의 몫이다. 선정적 묘사는 성폭력 근절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사건을 자극적인 애깃거리 정도로 소모시켜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sup>5)</sup> 이런 보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가중시키는 등 2차 피해를 낳을 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정서와 감정도 손상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법익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사례3) 자극적 문구와 선정적 제목의 ‘어뷰징’ 또 ‘어뷰징’

자극적이고 음란한 상상력을 유발하는 제목은 단골 위반사례였다. 일반 기사에서도 낚시성 제목은 언론 스스로 품격을 떨어트리는 행위이지만 ‘객관적 사실 보도’로 위장된 미투보도에서 제목의 어뷰징은 심각한 수준이다. 언론사가 클릭 수를 늘리기 위해 동일한 제목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인터넷 포털에 전송하거나 인기검색어로 끌어올리기 위해 클릭 수를 조작하는 게 어뷰징의 사전적 의미이다.

미투보도에서 사전적 의미를 초월한 자극적·선정적 표현의 제목 어뷰징이 특히 심한 편이었다. 언론들이 피해자 인터뷰 내용이나 소셜미디어에 올려진 글에서 자극적인 문구를 뽑아내는 방식은 똑같았다. 여기에는 ‘XX’처럼 특정 신체부위의 명칭을 의도적으로 영문 대문자로 바꿔 독자들의 음란한 상상력을 유발한 뒤 음담패설 수준의 대화형 제목을 남발하

5) 배나은 (2018. 2. 28.), 수정된 기사, 충격적 원문...문제적 ‘미투보도’ 모아보니, <오마이뉴스>. URL: <https://goo.gl/L9Fqkw>

는 일관성도 보였다. 낚시성 제목과 기사의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미투 기사 제목의 자극성과 중독성이 본질을 호도한다는 사실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피해자 증언이나 인터뷰, 폭로글 전문을 게재한 기사 또한 가독성을 높이지 모르지만, 독자들의 말초적인 관심만 자극해 피해자의 고통과 용기 있는 행동을 흥미 위주의 애깃거리로 둔갑시키는 폐해를 낳는다. 실제로 메이저급 언론사를 포함한 인터넷 매체들의 낮 뜨거운 선정적 제목 경쟁은 미투운동을 관음증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게 만들기도 했다.

“몸부림 한번 치자, △△ △△ 어떠냐?” 김기덕, 여배우에 이런 말을 수시로...(동아닷컴), “△△에 나무젓가락 △△...” 손석희도 놀란 ○○○의 폭로(인터넷 국민일보), 「배우 조민기 카톡, 본인 △△ 사진까지 보내? “그 △ △로 어찌해줘” 경악스러운 ‘성집착’(인터넷 서울경제), 「최영미 시인, 고은 성추행 추가 폭로..△△ 하면서 ‘니들이 여기 좀 만져줘’(뉴스웍스), 「김기덕·조재현 성폭행 파문, 숙소서 강제 겁탈...“너 △△ △△색이야? 맛 어떠니?”(인터넷 제민일보), 「디아나 초단, 여기는 어디? 비키니 차림으로 여러 사람과 동시에...(인터넷 제주일보). 이런 제목들이 해당 매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뿐 아니라 제휴를 맺은 포털사이트와 모바일 화면에 경쟁적으로 올랐다.

선정적 제목과 기사의 어뷰징은 피해자의 의도를 왜곡시키고 미투운동의 본질과 개선책에 대한 관심을 희석시킬 수밖에 없다. 이슈의 본질에 접근하는 인식의 방해물인 어뷰징은 그 1차적인 피해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차원을 넘어 미투운동의 본질을 왜곡하고, 이것이 사회운동과 혁신으로 이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는 견해<sup>6)</sup>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사례4) 메신저 내용까지 그래픽 기사화, 음란물이 따로 없다

조민기 성추행 사건의 n번째 피해자로 미투운동에 나선 한 여성이 익명으로 제보한 내용을 토대로 스포츠조선닷컴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 메신저 대화를 여과 없이 그래픽 화면에 재구성했다. 음란성의 극치를 이룬 이 대화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던 조씨의 성희롱 발언에 피해자가 매우 난처하고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피해자는 어처구니없이 당한 성희롱 피해의 수치심과 분노를 언젠가 고발하기 위해 그 날의 대화 텍스트를 백업 파일로 보관해오다 제보한 것이다. 그러나 언론은 지나칠 정도로 선정적으로 상황을 재구성해 보도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지극히 무심한 면을 보여주었다. 인터넷신문인 여원뉴스는 스포

6) 김은미 (2018). 미투운동 관련 뉴스 확산의 특징: 어뷰징으로 기사량 폭발할수록 '미투' 핵심은 사라져. (신문과 방송), 5월호, 62-66.

츠조선닷컴에 게재된 메신저 대화 내용과 그래픽 기사를 그대로 전재해 이 뉴스의 확대재 생산에 기여했다. ‘한 매체와의 익명 인터뷰에 나선 A씨’의 얘기라면서 어부지리 보도를 증폭한 셈이다.

#### 4. ‘인격권 침해 최소화’ 보도 가이드라인, 무용지물인가?

미투운동은 미국의 영화 산업계에서 먼저 시작됐다. 남성중심주의의 가부장적 문화에서 성적으로 억압돼 온 한국에서도 언젠가는 터져야 할 일이었다. 미투의 확산과 보도를 예의주시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소위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과 언론의 역할을 실감했다. 더 나아가 어렵게 용기를 낸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미투보도에 따른 인격권 침해는 미투운동의 본질을 훼손하고 좀 더 성숙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라는 인식도 공유했다. 저널리즘 윤리의 측면에서 미투보도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게 된 계기다. 그 결과, 상당수 언론들의 미투보도 행태는 인권의식 결여와 상업주의에 경도된 채 언론의 정도에서 한참 벗어났다. 특히 인터넷신문등록제 이후 우후죽순처럼 급증한 인터넷신문들의 선정성 경쟁과 베껴쓰기 관행, 그로 인해 침해 받는 인격권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성범죄 사건 보도에서의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실천적 대안이 보도 준칙이나 가이드라인 형태로 구체화됐으나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다. 언론의 철저한 성찰과 보도윤리 실천, 기자들을 상대로 한 인권교육 문제가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언론이 미투 취재보도 과정에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관련 규정과 보도준칙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지를 생각해보았다.

우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5조(언론 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는 언론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인격권)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했다. 이 조항은 언론사에 한정된 것이지만 일반적 인격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거나 보도가 공익에 관한 것으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와 ‘진실하다고 믿는 정당한 사유’를 둘러싸고 언론 자유와 인격권 침해 간 균형을 맞추기란 물론 쉽지 않다. 언론은 뉴스 가치가 있고 공익에 부합하는 보도인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며 늘 면책을 주장한다. 시정권고 말고도 언론중재위에 접수되는 조정·중재신청 사건에서도 대부분의 언론은 표현 자유에 내재된 ‘합리적 의혹 제기’와 ‘진실성과 상당성, 공익성’, ‘알 권리 충족’ 등을 이유로 정정이나 반론보도, 손해배상에 매우 인색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

에 연유한다. 시정권고 역시 '권고' 수준에 그치는 것도 규제와 법령을 과도하게 적용하면 자칫 '언론 자유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낳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법이다. 책임이 뒤따르는 자유라야 품격이 있다. 법과 제도로 언론



자유를 만끽하는 민주사회에 살고 있지만 국민은 인격권까지 침해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언론에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미투보도에 투영되는 언론의 윤리의식에 대해 독자들은 어떤 평가를 내릴까.

미투보도가 한창이던 지난 2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전국의 20~50대 성인남녀 1,0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응답자의 75.3%가 언론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부각시키는 등 피해자 인격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비해 언론이 미투사건을 국민에게 잘 전달하고 있다는 답변은 65.4%에 그쳤다. 성폭력 피해 사실의 상세한 묘사 등 선정적 보도가 많다는 응답(48.9%)이 사안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심층분석을 제공한다는 반응(42.4%)을 앞지른 것은 우려했던 대로다. 객관성이라는 이름 아래 무절제한 미투보도가 외설 수준의 선정적 보도와 진실 공방의 '편 가르기식' 보도로 이어지는 것을 독자들도 이미 간파하고 있는 게 아닐까.

둘째, 언론중재법에 근거한 시정권고 심의기준 말고도 성범죄 사건 보도 때 기자들이 꼭 유념해야 할 가이드라인이 있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12월 공동 제정한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기준과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이 그것이다. 한국여성민우회도 이보다 앞서 2006년 6개 주요 언론을 모니터링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보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불행하게도 미투보도의 숱한 문제점을 살펴다보면 과연 이런 가이드라인이 언론인 사회에서 제대로 공유는 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범죄를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으로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규정짓고, 언론이 이를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반인권적 범죄 행위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한다. 또 성범죄의 근본 원인이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에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성범죄 사건 보도 때 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 침해 등 2차 피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준칙 안에 별도의 실천 요강을 제정, 취재보도 과정에서 언론의 2차 가해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우선 피해자 신상 식별이 가능한 정보 공개를 철저히 금지하고, 본질과 무관한 피해자 사생활 보도로 마치 피해자에게 범죄 유발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가해자 중심적 성 관념에 입각한 용어나 불필요한 성적 인 상상을 유발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언론은 성범죄 수법과 과정, 양태, 그리고 수사과정에서의 현장 검증 등 수사 상황을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가 만든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은 인격권 침해 보도를 4단계로 유형화 한 특징을 지녔다. 첫째, 성폭력 역시 명백한 폭력행위인 만큼 가해자의 변명을 인용해 기사에 설명하지 말 것과 성범죄를 선정적이고 희화화해 보도함으로써 호기심을 자극하는 애깃거리로 전락시키지 말 것 등 폭력의 성애화를 금지한다. 또한 성폭력을 일상과 분리된 범죄로 부각시키거나 가해자의 단순한 성욕 문제, 딸을 가진 부모가 조심해야 할 범죄 등으로 바라보고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여성 개인의 예방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잘못된 통념을 재생산하는 보도는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성민우회는 성폭력이 피해자 인권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사건이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비화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언론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 대책을 보도하는 과정에서도 검증되지 않고 실효성도 없는 대책을 부풀려 나열하는 것을 지양하고, 피해자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 등 '실질적 공공성'에 기여하는 데 앞장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 마디로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여성민우회 등이 공통적으로 언론에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 인격권 침해를 막고, 본질에 주목해서 범죄유발 구조의 개선에 앞장서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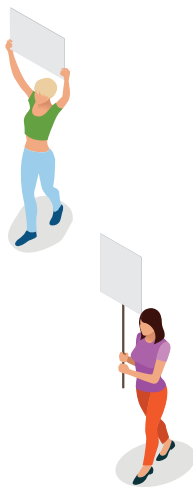
미투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분이 큰 것에 비례해 보도의 부작용 또한 예상 밖으로 심각하자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가 부심 끝에 이전보다 실용적이고 강화된 보도 가이드



라인을 공동제작했다. 최근의 일이다. 책자의 제목 '성폭력·성희롱 사건, 이렇게 보도해 주세요!'가 말해주는 것처럼 언론에 맹성을 촉구하고 이제부터라도 인권의식을 갖고 기사를 작성해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이한 점은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가 책자에서 실천요강 바로 앞에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을 넣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보도에 앞서 피해자 처지에 대한 언론의 공감 능력을 촉구한 것으로,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헤아린 뒤 취재·보도 실천요강을 엄격히 준수하며 보도해달라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 공감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성폭력·성희롱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한 뒤 사건 및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사회통념이 보도를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피해자 보호 우선과 선정적·자극적 보도 지양, 신중한 보도, 성폭력 예방 및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저널리즘 윤리와 본분을 강조하고 있다. 보도 가이드라인적인 구체적인 실천요강은 취재할 때와 보도할 때의 경우로 구분해서 각각 2개항과 10개항의 준칙으로 구성됐다. 각 항목에는 왜 이런 준칙을 넣어야 했는지 실증적 보도사례와 법원의 판례, 조정·중재 및 시정권고 사례를 설명 자료로 넣어 기자들의 이해를 돕고 취재보도 과정에서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일이 없도록 예방적 조치를 강화했다.

성범죄 보도 준칙이나 가이드라인, 실천요강이 완벽하게 갖춰졌다고 해서 언론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 이번 경우가 이를 방증해준다. 유사한 이슈가 또 터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금방 끓고 식어버리는 '냄비 언론'의 근성을 발휘하는 게 한국 언론의 속성이다. 앞서 소개한 보도준칙이나 가이드라인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보도 윤리규범을 가진 언론사들도 있으나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모두 구두선에 불과하다. 설상가상으로 언론사 설립을 등록제로, 사실상 자율체제에 맡긴 이후 인터넷신문을 포함한 언론매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도 성범죄 사건 보도의 난맥상을 부추기고 있다. 조정·중재 심리를 하다보면 언론으로서의 기본 자질도 못 갖춘 상태에서 무단 전재와 '어뷰징'에 치중하는 소규모 인터넷신문들의 모습을 보고 종종 놀란다. 이런 상태에서 성범죄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의 준수나 기자들의 인권교육을 권하는 것은 사치나 다름없는 일이다. 잘못된 보도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투보도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성범죄 양상에 따라 관련 법률이 개정되거나 심의기준도 바뀔 수 있다. 보도준칙과 가이드라인도 새로운 상황을 반영해 또 보강될 수 있다. 문제는 수용자인 언론의 자세이다. 잘못된 보도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새롭게 단장을 한들 공염불에 그칠 게 뻔하다. 언론이 '사회적 공기(公器)'인 것은 이런 관행을 거부하고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며 건전한 대안을 제시, 독자들로부터 울림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회의 건강한 척도는 언론에서 찾는다. 미투보도에만 국한시켜볼 때 우리 언론의 '인권 감수성'은 과연 건강한 것인지 언론 스스로 되돌아보았으면 한다. 



# 02

---

## 미투보도 속 우리가 놓친 것 한·미 보도 비교를 통해

남지원 경향신문 정책사회부 기자

---



하비 와인스타인(Harvey Weinstein)과 안태근. 전자는 할리우드의 저명한 영화제작자였고, 후자는 검사로서 갈 수 있는 최고의 요직 중 하나인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한국 법조계의 실세였다. 한국과 미국에서 ‘미투운동’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계기는 이 두 사람에게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미디어에 노출되면서다. 2017년 10월 5일 뉴욕타임스는 와인스타인이 수십 년에 걸쳐 배우와 영화계 관계자들을 성추행해왔다고 보도했다. 2018년 1월 29일 한국에서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근무하는 현직 검사 JTBC <뉴스룸>에 출연해 2010년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한국의 대중들은 공히 피해자의 증언에 분노했고 이를 동력으로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운동’이 사회 전반에서 불붙었다.

하비 와인스타인의 지속적인 성폭력을 밝혀낸 뉴욕타임스와 주간지 뉴요커는 나란히 2018년 공공부문 폴리처상을 받았다. 브래드 피트(Brad Pitt)가 이끄는 영화사가 뉴욕타임스의 취재 과정을 영화화하기로 했다. 안태근 성폭력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한 JTBC는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2018년 1월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두 보도 모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안태근 사건과 그 이후 쏟아져 나온 미투보도에서 한국 언론은 ‘사건을 선정적으로 소비한다’거나,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돌린다’는 등 수많은 비판에도 직면했다.

폴리처상을 받은 일련의 보도는 모두 22건이다. 뉴욕타임스 기사 18건, 뉴요커 기사 4건이 수상작 리스트에 올랐다. 폴리처상 선정위원회는 “할리우드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제작자를 포함해 권력이 있고 부유한 성범죄자들을 드러낸 폭발적이고 충격적인 저널리즘”이라며 “억압됐던 목소리들을 전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폭력을 심판해야 한다는 전 세계적 흐름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이 기사들이 성폭력 사건을 보도한 방식과 공통점을 짚어보면 한국 언론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힌트를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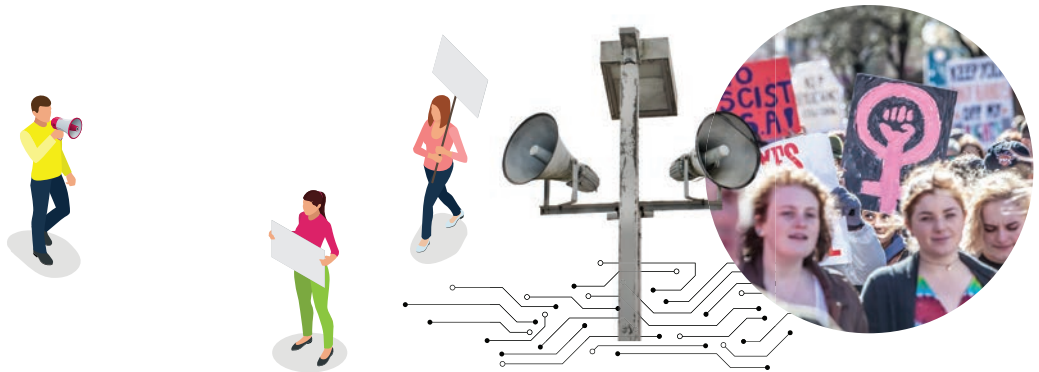
## ■ 폭로-크로스체크, 다수의 증언

와인스타인이 저지른 수십 년간의 범죄를 다룬 첫 뉴욕타임스 기사는 할리우드의 유명 여배우 애슐리 주드(Ashley Judd)의 폭로로 시작한다. 20년 전 와인스타인은 주드를 폐닌술라 베버리힐즈 호텔로 초청했다. 당시 어린 배우였던 주드는 이 초대가 단지 업무상 조찬 미팅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와인스타인은 주드를 방으로 불렀고, 샤워 가운만 입은 채로 나타나 그녀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했다. 아니면 자기가 샤워하는 모습을 지켜봐달라고 했다. 주드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어떻게 하비 와인스타인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고 그 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겠어요?” 전 세계 미투운동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애슐리 주드의 폭로에만 의존하지는 않았다. 대신 다른 증언을 더 수집했다. 2014년 와인스타인 컴퍼니에서 단 하루 임시직으로 일했던 한 대학생은 와인스타인으로부터 “나와 성관계를 맺으면 경력에 도움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또 다른 직원의 메모도 입수했다. 메모는 “나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28세 여성이고, 하비 와인스타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64세 남성이다. 여기는 그의 회사다. 와인스타인의 권력이 10이라면 나의 권력은 0이다”라는 내용이었다. 와인스타인이 수십 년 동안 성폭력 문제로 여성들과 최소 8건의 법률적 합의를 했고, 이들은 최소 8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를 받았다. 뉴욕타임스는 이 보도를 위해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 8명과 접촉했다. 며칠 뒤 기네스 펠트로(Gwyneth Paltrow)와 안젤리나 졸리(Angelina Jolie)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와인스타인이 성추행 시도를 했다고 폭로했다.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신인 시절 와인스타인에게 성추행을 당할 뻔 했던 펠트로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브래드 피트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 피트는 와인스타인을 만나 다시 그녀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스는 피트 측 대변인과 접촉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와인스타인 사건을 취재한 것은 뉴욕타임스뿐만이 아니었다. 미국 주간지 뉴요커도 10개월 동안 이 사건을 추적했다. 뉴욕타임스 보도 닷새 뒤 1960년대부터 2015년 사이에 와인스타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 13명의 이야기가 뉴요커에 공개됐다. 뉴요커 역시 피해자뿐만 아니라 와인스타인 컴퍼니의 전직 간부와 직원들로부터도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뉴요커 보도에 등장한 사례는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것보다 더 심각했다. 일부 전직 여배우들은 와인스타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거나 구강성교를 강요받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뉴요커는 와인스타인이 이스라엘의 비밀 정보기관 모사드 출신인 탐정을 고용해 성폭력 사실을 폭로한 여배우의 뒷조사를 했다고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와 뉴





요커 보도가 이어지면서 70명이 넘는 여성들이 와인스타인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했다. 처음에 강간 혐의를 부인하던 와인스타인은 끝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금 더 과거로 시간을 돌려보자. 폴리처상 수상작 목록에는 폭스뉴스 간판 앵커인 빌 오라일리(Bill O'Reilly)의 성추문을 폭로한 뉴욕타임스의 2017년 4월 1일 보도도 올라 있다. 오라일리가 폭스뉴스에 재직하는 15년 동안 성추행 사건 5건에 휘말렸고, 피해여성들이 성추행 사실을 밝히거나 소송을 내지 않는 대가로 모두 1,300만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이 보도에서도 뉴욕타임스는 여러 명의 전·현직 폭스뉴스 직원과 접촉했고, 회사로부터도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오라일리는 단 3년간 폭스뉴스에 4억 6,600만 달러의 광고수익을 올려줄 정도로 미국 보수진영의 스타 앵커였지만, 이 보도 이후 주요 광고주들의 광고 중단이 잇따르는 등 파문이 커지자 결국 퇴출당했다.

### ■ ‘피해자 증언’에 올인한 한국 미투보도

폴리처상을 받은 뉴욕타임스와 뉴욕커 보도의 공통점은 취재진이 사실 확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었다. 애슐리 주드나 기네스 펠트로 같은 톱스타가 실명을 공개하고 와인스타인에게 입은 피해를 공개했지만, 그 자체로만 뉴스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이들이 말한 일이 실제 벌어졌는지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언들을 가급적 많이 확보하고, 그렇게 모은 개별 사건들에 맥락을 부여해 하나로 엮었다. 수많은 사례와 증언을 엮은 두 언론사의 보도는 미투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데 불을 붙이는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져왔다.

와인스타인 사태로부터 4개월 뒤, 한국에서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찰국장으로 부터 입은 성추행 피해를 증언하면서 미투운동이 시작됐다. 얼마 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가 서 검사와 똑같은 자리에 앉아 안 전 지사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히며 불붙은 운동에 기름을 끼얹었다. 차기 대선

주자로 분류됐던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정치생명이 끝났다. 서 검사 단독인터뷰와 이어진 미투 연속보도에 이달의 기자상을 준 한국기자협회는 이렇게 평가했다. “서지현 검사 단독인터뷰가 국내 미투운동의 출발점이 됐고, 현직 검사가 생방송에서 공개 폭로를 하고 나왔다는 점에서 파괴력이 큰 기사였다는 점이 인정됐다. 여성의 인권이 무참하게 유린됐던 권위주의적 문화에 대한 사회적 성찰을 추구하는 미투운동의 출발점인데다, 성역과 같았던 현직 검사의 폭로를 방송 인터뷰를 통해 공개적인 사회적 공론장으로 이끌어낸 점에 대해 호평이 제시됐다.”

언론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사건의 피해자를 적시에 찾아 인터뷰하고, 성폭력을 용인하는 문화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은 높이 평가받아야 할 일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미투운동을 결정적으로 촉발시킨 두 인터뷰는 뉴욕타임스와 뉴요커의 와인스타인 사건 보도와 그 양상이 확연히 달랐다. 기자가 오랜 시간에 걸쳐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증언을 수집해 조합하는 대신, 피해자가 실명을 내걸고 나서서 전 국민에게 생방송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독자/시청자의 신뢰를 확보했다. 특정인의 증언이 믿을 만한지 아닌지는 언론이 취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책임을 스튜디오에 앉은 피해자가 짊어지게 된 것이다. 안태근과 안희정 사건을 거치며 굳어진 이 같은 ‘실명 보도’ 행태 때문에 피해자들은 가족관계 등에 대한 ‘지라시’가 돌고 악성댓글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입게 됐다. 언론이 증언의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성폭력 사건을 폭로하자 이를 믿지 않은 대중들이 “그 증언은 믿을 수 없다”고 공격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소속 언론학자 109명은 3월 19일 성명을 내고 “피해자가 직접 출연하는 생방송 인터뷰의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을 피해자가 오롯이 져야 하기 때문에 인터뷰 후 심각한 2차 피해를 볼랐다”고 지적했다. 익명으로 하는 성폭력 피해 고발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도 문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 남아 있는 한국 사회에서 ‘실명으로 하는 미투만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 피해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폭로에만 의존한 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한국 언론의 전반적 문제였다. 미투운동이 막 불붙기 시작한 2월 초, 최영미 시인이 〈황해문화〉의 지난 겨울호에 게재한 시 ‘괴물’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시 속에 등장하는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는 것으로 유명한 ‘En선생’, ‘노털상 후보’는 누가 봐도 문단의 원로 고은 시인이었다. 이 시를 접한 신문과 방송은 발빠르게 “원로 시인이 문단 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얼마 뒤 언론에 고은 시인의 실명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류근 시인이 “고은 시인의 손버릇을 이제야 마치 처음 듣는 일이라는 듯 소스라치는 척 하는 문인들과 언론의 반응이 놀랍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뒤부터였다. 이후 보도는 ‘폭로’와 ‘반응’만





면, 온라인 익명게시판 게시물만을 기사의 출처로 삼는 것은 기자가 취재원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지도 않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언론학계에서는 한국의 미투보도가 ‘발표 저널리즘’, ‘폭로 저널리즘’의 전형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홍주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미투운동에 나타난 방송 보도의 선정성과 방송의 선정성 해결방안 모색’ 논문에서 서지현 검사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한 2018년 1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방송에 나왔던 모든 미투 관련 보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225건의 보도 가운데 사회적·문화적·제도적 측면에서 미투운동을 분석한 보도는 없었다. 유명인의 성추행과 성폭행 혐의를 자세하고 선정적으로 묘사했고, 사실을 확인하기보다는 정보원의 제보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기에만 급급했다. 홍 교수는 논문에서 이렇게 비판했다. “미투운동이 사회 각계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특히 유력 정치인과 비서의 관계, 이미 보도된 고은 시인, 이운택 연출가, 연예인 등 미투운동에 내재된 권력 관계의 문제점, 왜 당시 용기를 내지 못했는지, 앞으로 여성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미투운동으로 드러난 여성혐오 현상, 직장 내 남성애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문제 등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기사는 없었다. 안 전 지사의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김지은씨와 안 전 지사, 주변인, 검찰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쓰는 ‘발표 저널리즘’의 전형을 보여줬다.”

## ■ 구조와 맥을 짚는 미국 미투보도의 힘

풀리처상을 받은 뉴욕타임스와 뉴욕커의 기사들은 와인스타인이나 오라일리 같은 유명인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심사위원회는 평범한 회사들에서 여성이 겪고 있는 부당한 일들을 파헤친 보도에도 주목했다.

수상작 중 하나는 포드자동차 생산 공장의 ‘성추행 문화’를 취재한 뉴욕타임스의 2017년 12월 19일 기사다. 이 기사에서 뉴욕타임스는 시카고의 포드 공장 2곳에서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겪었던 성추행과 인종차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선정적인 폭로를 앞세우는 대신 기사는 여성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폭력적 직장문화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상사들과 동료들은 여성 노동자들을 소유물 혹은 먹잇감으로 대했다. 남자들은 노골적으로 여자의 가슴과 엉덩이에 대해 떠들어댔다. 남자 성기 그림이 테이블에 새겨져 있거나 바닥과 벽에 스프레이로 그려져 있었다. 남자들은 여자들을 더듬기도 했고, 여자들이 있는 앞에서 성행위를 하는 시늉을 하거나 자위를 하기도 했다. 감독관들은 성관계를 대가로 더 나은 업무를 줬다. 거절하면 불이익을 받았다. 수십 년 전이나 일어났을 일이지만 오늘날 이 공장의 여성들은 이들이 유사한 폭력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말한다.” 뉴욕타임스는 70여 명의 전현직 노동자들과 한 인터뷰를 토대로 직원들이 입은 피해를 보도했다.

왜 이 공장에서 이런 일이 반복될까. 뉴욕타임스는 공장의 폐쇄성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추천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동창이나 친척, 오랜 친구들이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다. 험담이나 소문이 빨리 퍼지는 동시에 나쁜 행동을 저질러도 동료들이 비밀을 지켜주는 구조다. 포드 공장이 미국에서도 손에 꼽히게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많은 노동자들이 포드에 대해 충성심을 갖고 있고, 여성 동료들의 고발이 회사에 해를 끼쳐 월급과 복지에 타격을 입힐까 봐 두려워한다. 포드가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징계하지 않자 가해자들은 ‘이런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됐다. 이 보도가 나간 뒤 포드는 공식 사과하고 성폭력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며 노동자들의 고충을 조사하기 위한 인력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고발과 분석이 조화를 이룬 미투보도는 한국 언론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성폭력이 끊이지 않는 구조적 이유를 짚은 기획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겨레21은 몇 주 동안 미투운동을 꾸준히 표지 이야기로 올리며 왜 피해자들이 시스템에 기대지 못하고 폭로라는 수단을 택할 수밖에 없는지, 미투운동과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남성들의 저항, ‘백래시(backlash)’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등을 짚었다. 경향신문은 <침묵에서 미투로>, <미투는 혁명이다> 기획시리즈를 통해 미투운동이 발생한 사회적 배경을 짚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모색했다. 하지만 분



석이 고발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서 주목도가 떨어졌다. 폴리처상을 받은 보도가 문제를 고발하는 동시에 그 문제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분석해준 것과는 차이가 크다.

뉴욕타임스는 그 밖에도 다양한 시도를 해 호평을 받았다.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트와 협업해 남성 615명에게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는지 설문 후 분석한 결과물을 보도한 게 대표적이다. 여성의 절반 정도가 직장에서 어떤 형태로든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는 있지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중 대다수인 남성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는 데서 착안했다. 자신의 치부를 공개해야 하는 설문이기 때문에 뉴욕타임스는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을 만들었다. 가장 약하게는 '누군가가 싫어할 수도 있는 성적인 이야기나 농담을 한 적이 있다'부터 시작해 '한번 거절한 사람에게 데이트 신청을 계속한 적이 있다', '동의 없이 누군가를 쓰다듬거나 키스한 적이 있다', '성관계의 대가를 제공하겠다고 했거나 학대한 적이 있다'까지 수위가 올라가는 10가지 질문을 만들고 각자 해본 일에 체크하도록 했다. 설문 결과 조사대상의 25%가 10가지 선택지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농담을 했다는 사람이 19%로 가장 많았고 (위계에 의한) 성폭행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사람도 2%에 달했다. 이런 행동은 계층이나 나이, 결혼 여부, 정치 성향, 소득 수준 등을 가리지 않고 나타났으며, 직장 내 문화가 성폭력에 관대할수록 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새로운 통계를 확보해 성폭력 문화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한 것이다.

국내 언론 중에서는 한국일보가 비슷한 시도를 했다. 한국일보는 4월 한국리서치와 함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미투운동에 대한 생각, 성폭력 피해 실태 등을 조사했다. 미투운동이 두 달 가까이 진행된 뒤에 실시한 조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조사에서는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질문에 응답자의 46.3%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년층과 남성 가운데 동의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앞으로 성폭력 예방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대상을 어떤 계층으로 잡아야 하는지 드러내는 대목이다.



## ■ 뿌리깊은 성폭력 보도 문제 극복하려면: 한·미 보도가이드라인 등을 살펴보면

한국 언론의 성폭력 보도 행태가 문제라는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사건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선정적 측면에만 집중한 보도, 그리고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사생활을 공개하거나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떠넘기는 보도는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2차 피해를 유발한다. 문제가 계속되자 한국기자협회는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과 함께 2014년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성폭력 사건을 바라봐야 하며, 피해자를 범죄 피해자가 아닌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성폭력 자체를 '성적 스토리'로 소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범죄 수법을 묘사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불필요한 피해자의 신상정보나 사생활을 공개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미투운동 국면에서 나온 보도 상당수가 이 가이드라인을 어겼다. 특히 피해자들이 여과 없이 증언한 피해사실을 언론이 그대로 옮겨오면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았다. 포털에서 치열한 조회수 경쟁을 벌이는 인터넷 매체들이 피해사실 중 가장 선정적인 대목을 제목으로 뽑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민주언론연합은 2월 한 달 동안 방송과 온라인상 미투 관련 보도를 모니터링한 보고서에서 "미투운동에 동참하는 개인은 언론인이 아니기에 자신의 피해상황을 최대한 객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SNS에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들이 올린 SNS글을 인용 보도할 때는 수위와 표현을 정제하여 보도해야 한다"며 "선정적 묘사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 도움을 주기보다는 사건을 자극적인 이야기 소재로 소모시켜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사건을 있는 그대로 폭로하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도, 피해사실이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된 글이 언론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전파되면 피해자가 정말 알고 싶은 사건의 본질은 사라지고 성적으로 자극적인 이야기만 남는다는 얘기도.

민주언론연합은 그 밖에 ▲피해자와 폭로자의 신상정보에만 지나치게 집중해 '클릭 장사'에 몰두한 경우 ▲피해자가 저항했는지, 처신을 잘했는지를 묻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린 경우 ▲가해자 측 입장을 무작정 받아쓰거나 가해자가 받은 피해를 부각한 경우 ▲'나쁜손', '부적절한 행동'처럼 사건의 심각성을 희석시키는 부정확한 용어를 쓴 경우 등을 '문제적 미투보도'의 사례로 들었다.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도 미투운동을 계기로 새로 만든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에서 잘못된 미투보도 사례를 짚었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성추행 사건의 경우 일부 방송은 피

해자의 증명사진을 오래 노출시킨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영상은 비교적 짧게 내보냈다. 사건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피해자의 이미지를 활용해 외모 평가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소지를 만들었다.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남성이 같은 테이블에 나란히 앉은 여성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삽화를 보여주는 등 피해 당시 상황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안 전 지사를 수행하는 과거 영상을 비춰주면서 피해자를 붉은 원 등으로 표시하는 등 ‘피해자 신상털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여성 수행비서를 채용한 것이 문제’라는 취지의 보도가 많았는데, 이는 남성은 본능을 억제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왜곡된 인식과 이런 업무를 선택한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사건 자체를 선정적으로 묘사한 경우도 많았다. 일부 라디오 프로그램이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고, 방송 인터뷰에서 피해자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피해사실을 증언하자 온라인 매체들이 이를 그대로 받아쓴 선정적 기사를 쏟아내기도 했다. 가해자의 행위를 ‘더러운 욕망’이라고 표현하는 등 사건의 원인이 가해자의 절제할 수 없는 성욕 때문인 것처럼 보도한 사례도 있었다.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마치 ‘취조’처럼 피해 상황을 반복적으로 묻는 것도 2차 피해라는 지적도 있다. 피해 당시 상황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느냐”, “피해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 역시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떠넘긴다는 점에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 언론인들도 똑같은 고민을 한다. 미국 전문언론인협회(SPJ) 윤리강령의 첫 번째 원칙은 ‘진실을 찾아서 보도하라’, 두 번째는 ‘피해를 최소화하라’다. SPJ는 특히 보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갖고, 청소년이나 성범죄 피해자 등을 다룰 때는 기자가 더 민감해져야 한다고 권고한다. 호기심에 과도하게 매달리지 말고, 공인과 달리 사인은 개인정보를 지킬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도 있다.

미국의 비영리 언론인 재교육 전문기관인 포인터연구소(Poynter Institute)는 2017년 말 와인스타인 사건 등으로 미투보도가 쏟아져 나오자 ‘언론이 어떤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을 다뤄야 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여기에 따르면 기자는 보도하기 전 먼저 ▲가해자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인물이며 희생자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취재원이 몇 명이나 되며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취재원이 익명을 요구할 경우 그 이유를 이해하면서 해당 취재원이 준 정보를 믿을 수 있는지 ▲희생자들에게 불필요한 피





해를 입히지 않도록 사전에 피해자의 심리상태가 안정적인지 확인하고 인터뷰를 섬세하게 진행할 준비를 했는지 ▲고발당한 사람으로부터 반론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지 ▲보도와 의사결정 과정을 독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 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용어 선택도 문제가 된다. 뉴욕타임스는 와인스타인 사건을 보도하면서 ‘강간(rape)’ 대신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nonconsensual sex)’라는 표현을 썼다. 완곡한 표현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사사법제도의 용어 대신 독자의 이해를 쉽게 하는 서술적인 용어를 쓰는 게 옳다는 판단에서다. 뉴욕타임스는 “우리가 쓴 기사가 형사재판에서 다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히 법률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사회에서 미투운동이 확산된 것은 언론이 성차별적 위계와 권력구조의 민낯을 보여주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성중심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행태로 인해 고발을 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고, 이로 인해 여전히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드러내기 어려워하는 것도 사실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4월 ‘미투와 언론보도’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 한국 언론은 미투운동을 접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그만큼 미흡한 점도 많이 노출했다. 한국 언론의 젠더감수성이 전반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을 따지기 이전에 기본적인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켰는지부터 돌아볼 일이다. 발표나 폭로에만 의존하는 대신 독자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사건사고 보도에 있어서 선정성 경쟁을 벌이는 대신 분석과 탐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 등 언론이 준수해야 할 원칙을 다시 떠올려봐야 할 때다. 🌐



# 03

---

## 미투운동의 걸림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둘러싼 쟁점과 개선 방안

손지원 변호사

---



## 1. 들어가며 – 미투운동 위축시키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소셜 미디어 등에 자신이 겪었던 성폭력 경험을 고발하고 그 심각성을 알리는 미투운동 (#MeToo 나도 피해자다)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투 운동은 범죄적 성폭력뿐만 아니라, 그간 남성중심사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되어 ‘용인’되어 왔던 일상화된 성희롱을 포함한 일체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고발 및 공유하고 공적 비판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행위가 용인되어서는 안 될 폭력임을 사회와 가해당사자에게 자각시키는 기능을 한다.

피해자는 자신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 자체로 이미 많은 위험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흔히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를 촉발시킬만한 ‘여지’를 주었던 것은 아닌지, 혹은 다른 목적이 있는 소위 꽃뱀은 아닌지 등 피해자의 행실도 함께 평가나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제3자로부터의 2차 피해를 충분히 예상하지만 이를 감수하고 폭로에 나선다. 그만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벌 혹은 사회적 단죄를 통하여 정의를 회복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막는 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불이익보다 미투운동을 더욱 현실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은 성폭력 가해자가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를 법적으로 압박하는 2차 가해다. 성폭력 가해자는 피해자를 무고 혹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거나 폭로를 중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법적 수단을 활용하여 협박할 수 있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가해자의 행위를 대외적으로 알려 사회적 논의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미투운동의 본질상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행위이다.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했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라는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되기 때문에, 미투 폭로를 한 성폭력 피해자들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자동적으로 떠안게 되고, 가해자들은 이러한 취약점을 이용할 수 있다. 성폭력은 주로 은밀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찾기도 쉽지 않다. 또한 사회의 잘못된 편견으로 인하여 성폭력을 당한 사실 자체가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형사고소를 주저하기도 한다. 이렇듯 성폭력 범죄의 고소는 어려운 일인 반면, 명예훼손죄 고소는 해당 표현물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제출만으로 매우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요즘처럼 대부분의 공론화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표현물의 URL 링크나 캡처 화면을 제출하기만 하면 성폭력 가해자는 쉽게 피해자를 위축시킬 수 있고, 성폭력 피해자는 오히려 하루아침에 피해자에서 명예훼손의 ‘가해자’, ‘피의자’로 수사대상이 되어 경찰서에 출두해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당한 상황은 비록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인해 그 심각성이 더욱 가중된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든 진실이든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는 일단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명예훼손 고소를 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피고소인은 자신이 공표한 사실이 '진실'임을 증명하여도 피의자 신분을 당장 벗어날 수 없다. 최종적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에 더하여 자신의 공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며 상대방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실제로 미투운동을 하였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필자에게 상담을 요청했던 한 상담자는, 상대방 남성이 상담자의 글을 캡처하여 경찰에 제출하면서 '어떤 부분은 사실이지만 어떤 부분은 허위'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경찰에 출두한 상담자는 적극적으로 해당 사실이 실제로 있었음을 소상히 진술하면서 입증해야 했다고 한다. 또, 경찰은 상대방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지속적으로 물었는데,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컸으나 개인적 감정 역시 배제할 수는 없는 성폭력 피해자로서 이에 답하는 것이 꽤나 난감하였다고 한다. 무엇보다 피해자인 자신이 피의자가 되어 경찰에 출석 요구를 받고 두려운 마음에 잠을 설치고, 경찰에 출석해서도 자신이 죄가 있는지를 몇 시간이나 취조당하는 것이 괴롭고 혼란스러웠다고 했다.

이하에서는 이렇듯 성폭력 가해자의 성폭력 피해 폭로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손쉽게 만들고 성폭력 피해자를 형사처벌 위협으로 몰아넣는, 이른바 2차 가해를 가중시키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9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를 둘러싼 쟁점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해 보기로 한다.





## 2.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공익 목적’, 죄의 성부를 예측할 수 없는 불명확한 개념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여 ‘공익 목적’을 ‘위법성 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비록 본 조항의 문언상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 판례는 다행스럽게도 이보다 더 넓게 해석하고 있다. 즉,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sup>1)</sup>고 하여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sup>2)</sup>고 한다. 또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대하여도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또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1)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2)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sup>3)</sup>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인격권 보호에만 편중되어 타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표현이 있으면 명예훼손 혹은 모욕으로 쉽게 형사 범죄가 구성될 수 있는 우리나라 명예훼손 법제의 불균형을, 형법 제310조의 폭넓은 해석을 통해 시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존치론에서는 이렇듯 사실의 적시에 있어서 공익 목적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고, 구체적 사안에서 법익 형량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역시 적절히 보호될 수 있으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요건 개념은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죄의 성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지 못한다. 대표적으로 다음의 판례들을 보자.

한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사장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몇몇 직원들과 함께 “○○○은 체불임금 지급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노동임금 갈취하는 악덕업주 ○○○ 사장은 각성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거리행진을 하였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인은 공소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단체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거리행진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의 동기 및 목적,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라고 하여 공익 목적을 부정하였다.<sup>4)</sup>

3)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4) 부산지방법원 2004. 6. 9. 선고 2004노1181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또 다른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한 제약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갑질을 고발하고자 ‘모 제약 회사는 거래 대리점들과 상의없이 타 회사에 제품의 판매권을 넘기고 불공정한 약관을 들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으며 본인이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밀실정책의 대표 회사인 모 제약회사는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성은 하수구에 처박아 넣은지 오래되었다(이상 필자 편집)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국회의원, 언론사, 다른 제약회사 등 11곳의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 사례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작성하여 게재한 글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소의 주식회사의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공소의 주식회사를 비방하는 취지가 그 내용의 주조를 이루고 있는 점, 위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는 정치인이나 언론사 또는 위 공소의 주식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제약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이 형법 제310조 소정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sup>5)</sup>

전자는 임금체불을 일삼는 악덕업주를 사회적으로 고발하여 압박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할 수 있다는 면에서, 후자는 대기업의 대리점에 대한 갑질을 고발하여 각성과 시정을 촉구하고 더불어 유사하게 팽배해 있는 부조리한 관행들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면에서, 충분히 공익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들이다. 그러나 판례는 ‘단체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비방하는 취지가 그 내용의 주조를 이루고’ 있다거나, 혹은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성격, 범위’를 따져서 공익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위 판례상 공익 목적의 유무는 적시한 ‘내용’의 해석만으로 판단되는 것이라기보다 그 전후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는 개념으로 죄의 성부를 예측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다.

### 3. ‘비방 목적’ vs ‘공익 목적’의 형량에 의존하는 죄의 성부

한편, 명예훼손의 수단이 전파성이 강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이거나 ‘정보통신망(인터넷)’인 경우에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가중처벌하되, ‘비방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보다 엄격하게 하고 있다.<sup>6)</sup> 이 ‘비방할 목적’의 해석과 관련하여, 판례는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행위

5) 울산지방법원 2004. 2. 6. 선고 2003노572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6) 「형법」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의 주관적 의도는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는 한편,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됨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sup>7)</sup> 즉, 우리 판례는 이 죄들의 구성요건인 ‘비방의 목적’ 여부 판단에 있어서 표현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동시에 위에서 말한 일반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익 목적 유무 판단에 있어서도 사실상 사적인 ‘비방의 목적’이 더 크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판례는 사실상 명예훼손죄 성부에 관해 구성요건 판단에 있어서든 위법성 조각사유 판단에 있어서든, ‘비방 목적’과 ‘공익 목적’을 상반되는 것으로 보고 그 비중을 비교衡量하여 죄의 성부를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치론은 이렇듯 상대방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더 큰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보다는 인격권 보호를 위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몇몇 제도개선안은 일반적 수단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도 ‘비방의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위헌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결국 위의 ‘공익 목적’ 유무를 기준으로 죄의 성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유사한 논쟁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즉, 판단자에 따라 지극히 달라질 수 있는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기준으로 죄의 성부를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보장하고자 하는 형사처벌 규정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위헌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판례는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의 판단은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도 비교, 고려하여야 한다<sup>8)</sup>고 하여, 위 공익 목적 판단에서와 같이 표현 내용 자체뿐 아니라 전후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다음 판례들과 같이 한 가지 사례에 관해서도 재판부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

이 사례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소비자가 포털의 산모카페에 「산후조리원 측의 막장대응」이라는 제목으로 “250만 원이 정당한 요구의 청구인가를 물어보니 막장으로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네요. 이러면 제가 겪은 사실 모두 후기에 다 올리겠다 했더니 ‘해 볼테면 해봐라’며 오히려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7)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등

8)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등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경우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신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sup>9)</sup>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판례의 원심에서는 이 사건 카페는 회원수가 20,000명이 넘는 점, 이 사건 각 게시물 내용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을 넘어 피고인의 불만제기에 대응하는 피해자의 태도와 언행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환불요구를 거절한 직후 게시물 및 댓글을 계속적, 중복적으로 게재한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며 유죄로 판단했었다.

한편, 12년 전 미투운동과 유사한 사안에서도 재판부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온 사례가 있다. 지역 여성단체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에 국립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제자인 여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학내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그리고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sup>10)</sup>하였으나, 이 사건의 원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해당 여성단체에 유죄를 선고했었다.

“범죄 사건의 공표와 관련하여는 헌법상 형사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인정되므로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 자체에 관한 사실을 공표하여야 할 것이며, 범죄 자체를 공표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9)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10)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있는 것은 아니며,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에 관한 공표가 범죄 자체에 관한 공표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 ① 피고인들은 피해자 2의 강제추행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조사를 함이 없이 추행을 당한 사람의 일반적인 진술만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 2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기도 전에 위와 같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지역 여성단체 소식지에 게재한 점 ② 당시 피해자 2는 강제추행혐의 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2의 범행이 확정된 듯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③ 피해자 2의 범죄와 관련하여 당시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는데, 피고인들은 그 신분과 실명을 명시한 점 ④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함으로써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위 내용을 쉽게 볼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또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위 내용이 계속 게재되어 있었던 점 ⑤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거쳐야 되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피해자 2에 대한 위와 같은 사실의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거나 피해자 2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sup>11)</sup>

즉, 원심은 성폭력과 같은 범죄사실의 공표에 있어서 충분한 증거나 조사없이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며 공표하는 것은 공익 목적보다 비방 목적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이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른다면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미투 폭로 역시 공익 목적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대법원에서 원심을 번복해 공익 목적을 인정하긴 했지만, 위 사례들은 죄의 성부를 가르는 ‘공익 목적’, ‘비방 목적’이라는 개념이 법에 정통한 법관들조차 그 판단의 중점에 따라 각자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불명확한 개념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공익 목적’과 ‘비방 목적’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한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sup>12)</sup>의 반대의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잘못된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의 목적도 함께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일수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도 함께 강해지기 때문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판하려는 목적과 비방할 목적이 서로 공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표현이 이루어진 제반 사정과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어느 목적이 더 주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항상 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일수록 공개로 인한 공공의 이익과 피해자의 명예에 대한 비난의 목적이 동시에 커지게 될 수도 있어 오히려 공

11) 대구지방법원 2003. 4. 11. 선고 2002노3684 판결

12) 헌법재판소 2016. 2. 25. 결정 2013헌바105·2015헌바234(병합)

개할 공익이 큰 행위일수록 비방할 목적이 더 커지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을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인된다고 보고 있는데,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이 항상 상반되는 관계에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대법원의 설시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가지고 있는 불명확성이 해소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공익 목적’, ‘비방 목적’의 유무와 정도를 기준으로 죄의 성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균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위 헌법재판소의 반대의견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는 결국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법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일임함으로써 일반 국민으로서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예측하기 어려워 스스로 표현행위를 자제하는 위축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서 비방할 목적이 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이 존재한다고 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표현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제한되거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가 완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 4. 정당한 표현에 대한 위축효과와 명예훼손 고소 남발로 인한 사회적 해악

또한 사후에 위 요건들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져 불기소 결정이나 무죄 판결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처벌가능성을 사전에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소의 남발이 제한될 수 없다. 미투운동에 대하여 명예훼손 고소로 대응하는 성폭력 가해자들도, 성폭력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될 것이라는 기대



보다는 일단 상대방을 형사피의자로 만들으로써 피해자 스스로 더 이상의 사실 유포를 중단하도록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

이와 같은 해악은 또 다른 위법성 조각사유나 추상적·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명예훼손죄가 구성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엄격히 부과될 것이고, 적어도 명백히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무고가 될 것을 염려하여 함부로 명예훼손 고소를 남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5. ‘허명’의 보호를 위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침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존치론은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 명예도 보호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은 제한될 수 있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하여는 헌법상 원칙에 따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명예 등 인격권)의 가치와 제한되는 법익(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의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더 큰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07조 제2항과 같이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제도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진실한 사실의 발설을 막음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의 명예는 진정한 명예라기보다 결국 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허명’ 혹은 ‘위선’으로서 보호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허명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말한 사람에게 형사적인 제재를 가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것은 헌법상 정당화되기 어렵다.<sup>13)</sup>

또한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알 권리도 심각하게 제한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재로 인하여 유독물질이 나온 식품, 화학제품, 비위생적 식당, 의료사고가 난 병원 등에 대한 보도는 유권기관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익명보도를 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 되었고, 국민들은 해당 업체의 실명을 몰라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선량한 업체나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거나 의심을 받아야 한다.<sup>14)</sup>

미투운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해자를 특정함이 없이 성폭력 사안을 폭로하면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다른 주변인들에 희석되어 부정적인 평가를 면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교정할 유인을 얻지 못하는 반면 선량한 주변인들이 억울하게 오해를 받을 수 있게 되

13) 신명 (2004). <명예훼손법>, 서울: 청림출판, 313.

14) 박경신 (2010). 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제도의 위헌성. <세계헌법연구>, 제16권 제4호, 1-29.

고, 미투 폭로를 한 피해자에게 오히려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비난의 화살이 다시 돌아가게 된다. 한편 이를 피하기 위해 실명을 공개하며 진실을 폭로한 사람은 형사처벌의 위협에 놓이게 된다.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폭로자, 제3자, 국민의 권리와 법익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과연 균형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까.

## 6.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존치론에서는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공연한 적시는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형사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남성이 특정 여성의 사생활을 타인들에게 말하고 다니면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들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여성 인권 보호 차원에서 꼭 필요한 법이라는 것이다. 한편 필자가 아는 이혼 전문 변호사는 본 법이 폐지되면 간통으로 이혼한 사람들이 전 배우자와 상간자들의 회사나 지인들에게 소문을 내 복수하는 일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분명 진실한 사실 중에서도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다룰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통해 사인 간에 해결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국민의 사적 권리침해에 있어 형사처벌은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간통죄는 폐지되어 간통을 저지른 사람들은 형사처벌할 수 없는데, 전 배우자가 이를 말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그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정당한가. 또한 예방적 금지 효과 역시, 형사처벌의 위협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행위금지가처분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가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도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포함하여 ‘명예훼손’ 자체를 비범죄화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UN 인권위원회나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등도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형벌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많은 나라들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폐지 논의를 하고 있다. 영미법계의 입법례를 보아도 명예훼손은 대부분 민사적인 방법에 의하여 해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개별 주 법상 존재했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적 처벌 관련 규정들도 표현의 자유 위축 및 피고인의 입증 부족으로 인한 유죄판결의 부당성 등을 이유로 위헌으로 판결되어 폐지되어 가고 있으며, 현재 4개의 주법만이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몇몇 나라 역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sup>15)</sup> 즉, 우리와 유사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는 나라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만일 타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을 드러내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필요성을 인정하여 본 조항을 존치시킨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현행 법조항이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축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예시로 든 임금체불, 대리점 갑질 고발 유죄 판결들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현행 법조항은 사생활이 아닌 일반적 '평판'의 보호를 위하여, 즉,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말을 한 경우라면 모두 범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법조항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개인의 내밀한 사적 정보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등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 7. 나가며

어떠한 법률조항이든지 그로 인해 보호되는 법익과 침해되는 법익, 사회적 해악을 비교衡量하여 해악이 더 크다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 법률로써 개폐되어야 한다. 최악의 경우만을 상정하며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해악이 더 큰 법을 그대로 존치시킬 수는 없다. 형벌법규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모든 비도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 혹은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는 결과를 막기 위해, 그러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형사범죄로 규정할 수는 없다. 형사는 단순한 개인의 분쟁해결수단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수사권,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는 국가의 강제적인 처분이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심지어 '허위'를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을 비형사범죄화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표현'이란 것은 맥락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로 인한 인격권 침해라는 해악 역시 주관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적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이에 국가형벌권이 개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15) 법제사법위원회 (20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 제2343호)에 대한 검토보고서.



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위험이 현저히 높기 때문이다.

각종 사회 부조리에 대한 내부고발, 권력자들에 대한 의혹 제기 및 실명보도를 위촉시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 발전적인 진보의 기회를 상실하도록 한다<sup>16)</sup>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둘러싼 논란은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다. 미투운동의 사회적 역할이 주목받고 있는 현재, 성폭력 가해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사례가 그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성폭력 사실에 대한 증명 없이도 손쉽게 폭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위축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물증이 있거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혹은 습관적으로 행해져 다수의 증언이 오갔거나, 메시지를 통해 기록된 경우 등 성폭력 사실이 진실이라고 어렵게 증명된 경우에도 이를 폭로한 성폭력 피해자를 형사처벌 위협에 놓이게 하는 것, 개별적 사안에서 본 법이 최종적으로 아무리 잘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의 존재 자체로 인한 사전적 해악이기에 근본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일 것이다.

최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연례인권보고서 한국편에서는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 현행 형법 규정 폐지 여부가 현 정부의 인권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찍이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sup>17)</sup>(2015)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sup>18)</sup>(2011)도 대한민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정식으로 권고한 바 있다. 미투운동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발맞추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혹은 합헌적 방향의 개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16) 앞의 박경신 (2010), 1-29.

17) Human Rights Committee (2015),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Adopted by the Committee at its 115th session (19 October-6 November 2015).

18) UN Human Rights Council (201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A/HRC/17/27/Add.2), URL: <https://goo.gl/g4UcaG>

# ‘글로벌라이저’로 사는 7가지 법칙

손관승 언론중재위원

2015년에 개봉되었던 영화 ‘인턴’은 미국 여성 영화감독 낸시 마이어스가 새로운 관점으로 그린 작품으로 여전히 마니아들의 호평을 받는 영화다. 남자 주인공인 벤(로버트 드 니로)이 70세의 나이에 2막 인생을 위해 30세에 성공한 여성 CEO 줄스 오스틴(앤 해서웨이)의 회사에서 인턴사원으로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다. 면접장에 긴장하고 있는 나이든 지원자 로버트 드 니로에게 인사부 담당자 벤 휘태거는 이런 말로 격려한다.

“뮤지션한테 은퇴란 없대요. 음악이 사라지면 멈출 뿐이죠. 제 안에는 아직 음악이 남아있어요.”

수십 년 직장생활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나이만큼이나 풍부한 인생경험이 무기인 그를 일으켜 세우는 금언과도 같은 멋진 말이 나온다. 그것은 잔뜩 풀이 죽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명대사다.

“경험은 절대로 나이 들지 않는다.(Experience never gets old)”

영화의 대사처럼, 인생은 정말이지 알 수 없다. 경험은 절대로 나이가 들지 않는 법이다. 오랫동안 말 내 삶의 도구였다면 이제는 글을 쓰면서 사는 일명 ‘글로벌라이저’가 되었으니까. 글이 취미나 호사가 아닌 생업활동의 일환이라는 뜻이다. 모임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을 만난다.

“아니 방송사 출신이 글도 쓰세요? 그러면 저희 같은 인쇄매체 출신들은 무얼 먹고 사나요? 좀 살살 하세요.”

물론 업살이다. 하지만 신문과 방송에 관한 한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하였다. 글 쓰는 사람은 글만 써야하고 방송기자는 방송에서만 나와야 하는 일종의 묵계 같은 것이다. 신문기자가 잠시 방송에 출연하면 내부적으로 ‘가볍다’는 힐난을 받거나 정치권에 진입할 목적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가수가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하고, 씨름꾼이나 농구선수 출신이 유명 연예인으로 탈바꿈하는 등 다른 분야에서는 장벽이 없어진지 오래다. 나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화답하곤 한다.

“신문사 출신 가운데 말씀씨가 좋아서 방송에 출연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 지금은 확실히 영역파괴의 시대다. 직업의 세계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다. 글과 말의 생태계는 확실히 바뀌었다. 이전에는 여의도와 상암동, 혹은 청담동 사람들과 주로 일을 하였다면, 퇴직 이후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 주로 광화문이나 마포, 혹은 파주단지 사람들과 일하고 있으니까.

글과 말의 융합은 미국, 영국 등 서구의 언론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연한 것이었다. 대표적인 인사가 데이비드 브룩스다. 그는 2000년 부르주아와 보헤미안을 결합한 ‘보보스’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 <보보스>라는 책으로 지식인 세계에 돌풍을 일으켰던 저자인데, 이후 뉴욕 타임스로 직장을 옮겨 이 신문사를 대표하는 저명 칼럼니스트 가운데 한명이 되었다. 그는 동시에 공영 텔레비전 PBS와 공영 라디오 NPR의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예일대학교와 듀크대학교 등에서도 강의를 하였다. 언론인으로서 올라온드플레이어다. 앞서 워싱턴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위클리 스탠다드, 애틀랜틱 같은 매체에서 근무했거나 함께 일을 하였으니 직업에 관한 한 노마드(Nomad)와 다름없다.

독일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표적으로 귀도 크놉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본래 역사 박사학위와 교수시험을 통과한 학자였지만 유력지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신문과 일요판 신문인 벨트 암 존탁의 언론인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공영 텔레비전 ZDF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이끌기도 하였고, <히틀러의 조력자> 같은 화제의 저서를 펴낸 전천후 지식인이다.

한국 신문방송계의 사정은 서구의 그것과는 크게 달랐다. 글은 글, 말은 말, 이렇게 구획이 엄격하였다. 신문 쪽 사람들이 보기에 방송인은 ‘가볍다’, ‘경박하다’, 내용은 없고 포장만 능하다’, ‘입만 살아 있다’ 등의 표현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대체로 부정적인 키워드였다. 오랫동안 문치(文治) 우위의 유산 탓이었을까, 아니면 사회가 잦았던 조선시대의 피해의식이 잔존해 있기 때문이었을까. 조선 숙종 때 중국을 방문했던 김창집 등 지식인들이 가져온 고문집이 전파되었는데, 특히 조선 사대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전당시(全唐詩)에 수록되어 있던 풍도(風道)라는 사람의 설시(舌詩)란 시가 있다.

“입은 화의 문이요. - 구시화지문(口是禍之門)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 설시참신도(舌是斬身刀)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 폐구심장설(閉口深藏舌)

몸 편안히 가는 곳마다 튼튼하다. - 안신처처노(安身處處牢)”

이 시를 남긴 풍도는 당나라 말기에 태어난 사람으로, 당나라가 패망한 뒤에도 진(晉), 거란, 후한, 후주 등 여러 왕조에서 벼슬을 하며 난세에도 불구하고 93세라는 장수를 누린 처세의 달인이었다. 그런 연유 때문인지 말이 어눌하고 과묵한 사람이 진짜 사나이로 여겨지던, 한국적 지식인 사회의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었다. 신문사끼리의 전직도 드문 현실에 신문사에서 방송사, 방송사에서 신문사로 이직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SBS 개국과 세계일보 창간, 중편방송의 출발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례적이었다.

다른 측면에서 해석하면 우리 사회의 언문일치(言文一致)가 제대로 확립이 안 된 탓이 크다. 말과 글이 따로 놓고 있기 때문이다. 말과 글의 불일치 현상이 한국처럼 심한 나라도 드물다. 그러다 보니 한국지식인 사회의 병폐 가운데 하나로 등장한 것이 ‘척척병’이다. ‘뭔가 학식이 더 있는 척’, ‘고전에 능통한 척’하는 습관이다. 실제보다 더 있어 보이고 부풀려 말하는 습관을 가리켜 영어에서는

‘overstatement’라 말한다. 물론 부정적인 의미다. 상당수 한국 지식인들은 자신의 지식냉장고에는 오래되어 부패되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최신 책을 읽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다른 사람이 요약한 것을 보고 읽은 척 떠든다. 이들은 학회, 워크숍, 강연 같은 곳에 참석하거나 신문 칼럼에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특정 직업집단이 특히 심하다. 고위 간부가 현직을 떠날 때는 으레 전별사라는 것을 남기는데, 도무지 현실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사용할 것 같지도 않은 중국 고사성어를 들먹인다. 뭔가 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에 고사성어 사전을 뒤진 노력은 가상하지만, 그렇다고 떠나는 인사들마다 고사성어 발굴경쟁을 하다보면 남아있는 고사성어가 있을까 걱정이다. 그러나 잘 쓰이지 않는 고사성어는 곧 ‘죽은 언어’다. 서양지식인 사회에서는 그토록 조심하라고 교육받는 대표적인 ‘overstatement’의 사례다.

독자를 상대하는 신문기자들은 칼럼이나 글을 쓸 때 크게 7가지를 유념하라고 배운다. 첫째, 주장이나 글의 요지가 명확해야 한다(왜 쓰는가?). 두 번째, 도입부가 흥미롭고 주제와 직결돼야 한다(리드). 세 번째, 중요 대목을 두루 짚어야 한다(완결성). 네 번째, 논리의 흐름이 순조로워야 한다(구성). 다섯 번째, 주장이 타당하고 팩트의 뒷받침을 받아야 한다(논리성). 여섯 번째, 무엇보다 독자가 알아듣기 쉬워야 한다(가독성). 마지막으로, 문장에 울림이 있어야 한다(여운).

신문과 방송은 물론 다르다. 신문이 시간을 두고 차분히 읽을 수 있기에 ‘차가운 매체(Cold Media)’라면, 방송은 직관과 감성이 더 먹히는 ‘뜨거운 매체(Hot Media)’다. 저명한 미디어 학자 마셜 맥루한(Mashall McLuhan)의 그 분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비주얼과 애드립에만 과도하게 신경 쓸 뿐 내용이 빈약한 방송언론인이 눈에 거슬리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신문기자들의 7가지 법칙은 방송 보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아무 말이나 막하면 ‘아무 말 대잔치’가 되는 것이다.

신문이나 잡지에 기고를 하고 책의 저자로 활동하고 있는 지금 내 삶의 방식을 가리켜 스스로 ‘글로벌 생활자’라 명명하고 있다. 진정한 글로벌생활자로 살려면 자기의 이름 석자가 들어간 저서가 있어야 한다. 나는 지금까지 8권의, 공저까지 합하면 9권의 책을 썼다. 그러다보니 가끔 집필의 요령을 묻는 분들도 없지는 않다. 독립적인 글로벌생활자로서 책을 쓰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몇 가지 집필 팁을 제시하고 싶다. 물론 지극히 나만의 주관적인 대답이다.

첫째, 책은 매스미디어가 아니라 ‘딥(Deep) 미디어’다. 세상 전체가 아닌, 관심 있는 분야의 사람들에게 좁혀가야 한다는 뜻이다. 세상 독자를 두루 대상으로 한 책도 없지는 않지만 그것은 극히 예외적이다. 가능한 한 타깃 독자층을 특정하게 좁혀가는 전략이 중요하다.

두 번째, ‘알아야 쓴다’라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완전히 섭렵한 뒤에 쓰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영원히 책을 쓰지 못한다. 오히려 ‘내가 진정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리스트를 정하고 자료를 모으고 생각을 정리하다보면 책은 저절로 나온다. 선후(先後)를 바꾸라는 말이다.

세 번째, 신문·방송과 달리 ‘중용’의 법칙을 펼쳐버려야 한다. 대신 치우침의 미학을 접해보라는 것이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치우치지 말고 늘 한가운데를 택하도록 교육받았다. 중용적 자세를 가지고서는 건전한 시민은 되겠지만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저자로 기대하긴 힘들 것이다. 보도의 영역에서는 객관이 최대의 미덕이지만, 집필의 영역에서는 저자의 색깔이 더 중요하다. 이름 하여 ‘주관적 객관’의 자세다. 그런 점에서 <닥터 지바고>로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가 자기의 일기장에 남겼던 독백 한마디를 들려주고 싶다.

“나는 모든 것의 극단에 서고 싶다/ 일에서나 길에서나 혹은 마음의 혼란에서나/  
운명과 우연의 끈을 항상 잡고서..”

넷째, ‘적자생존’을 기억하자. 지식사회에서는 적는 사람이 생존한다. 메모에 미친 사람이 되라는 거다. 청나라 사신단에 함께 오른 연암 박지원은 말 위에서 졸면서도 메모를 놓지 않았다. 괴테는 로마로 향하며 매일 기록하였다. 그들은 북위 40도에서 함께 글을 쓰고 있었다. 동서양 최고의 기행문이 동시대에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덕분이다.

다섯 번째, 책은 피부로 써야 한다. 기자들은 수습기자 시절 선배들로부터 ‘기사는 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발로 쓰는 것’이라는 교육을 귀에 못 박히도록 듣는다. 책상머리가 아니라 사건의 현장을 발로 뛰어야 훌륭한 기사가 나온다는 말이다. 책을 쓰는 데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피부에 와 닿는 체험과 구체성이 필수적이다.

여섯 번째, 당신만의 고유한 목소리를 들려줘야 한다. 글에서 당신의 얼굴이 보여야 한다. 고유한 색깔, 체취의 중요성이다. 이것은 인터넷 시대를 맞아 정보가 홍수를 이루는 때에 더욱 더 중요해졌다. 문장은 곧 그 사람, 자기만의 문장 스타일이 경쟁력의 근간이다.

일곱 번째, 모든 사람들로 부터 이해받겠다는 생각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어찌면 이것은 앞의 이야기보다 훨씬 중요하고 그래서 더 실천하기 힘든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늘 남의 눈, 남의 평가를 의식하면서 살고 있다. 때론 남들의 기준이 나의 가치관보다 상위에 놓여있을 때도 적지 않다. 그러나 자기의 이름을 걸고 쓴 책은 철저히 자기가 취재하고 자기가 데스크를 봐야 하는 1인극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외롭고, 그 외로움을 감당해야 한다.

피터 드러커는 60여 년에 걸쳐 30여 권의 저서를 낸 대표적인 리테라티(Literati)다. 젊었을 때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자생활을 하며 2-3년을 주기로 취재담당이 바뀔 때 빠져서 배워 평생 실천한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주제로 공부하라!”였다고 했다. 사람은 결심한 만큼 행복해진다. 외롭지만 집필하다보면 새로운 우주가 보인다. 인생의 폐활량도 확대되고 때로는 새로운 우주도 발견한다. 움베르토 에코의 다음 말에 나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편이다.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기쁨 두 가지는 자기 자식을 갖는 것과 자기 책을 펴내는 것이다.” 

# 블록체인요? 일단 스팀잇 계정부터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김동현 민중의소리 뉴미디어국장



대학 신입생 시절 선배들의 오가는 대화에 귀가 쫑긋했다. 이메일을 만들었다는 고학번 선배의 이야기에 다들 귀 기울이고 있었다. 계정을 어떻게 승인받았고 아웃룩을 어떻게 쓰는지 고학번 선배는 한참 설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그 선배의 경험을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었다. 한메일이 등장했다. 웹사이트에 접속해 클릭 몇 번으로 이메일을 만들었다. 아웃룩을 쓸 필요도 없이 그 웹사이트에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기술이란 그런 것이다. 등장할 때는 뭔가 어려워 보이고 초침단의 그 무엇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용자가 늘고 그 속도에 맞추어 편의성이 강화되면 일상으로 파고든다. 새로운 기술의 힘은 그때 발휘된다. '미리' 적응한 이에게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기회가 된다.

민중의소리는 소셜미디어에 꽤 빨리 적응한 매체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페이스북 팬이 43만 명이다. 트위터 팔로워가 22만 명이고, 유튜브 구독자는 15만 명이다. 소셜미디어로 콘텐츠 시장이 이동하는 것을 빨리 감지하고 빨리 뛰어든 결과다. 소셜미디어는 민중의소리에게 성장의 발판이 됐다.

어린시절을 제주도 농촌 마을에서 보냈다. 늦가을이 되면 돌담을 넘어 들어가 아직 노란끼도 제대로 들지 않은 굴을 따먹었다. 서리다. 아직 단맛이 제대로 들지 않은 신맛으로 가득한 그 굴을 먹겠다고 키보다 높은 담장을 넘었다. 몇 주만 지나면 굴은 신맛이 줄고 단맛으로 입안을 채워주겠지만, 그 누구보다 빨리 굴을 맛보는 즐거움은 꽤 흐릿한 기억이다. 과일의 세계에서 시골 어린아이들은 얼리어답터다.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시대를 열 수도 있다고 한다. 아직은 설익은 과일이다.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이들의 머릿속에서는 단맛이 강렬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입에 넣어본 적이 없다.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 중 하나가 스템잇(STEEMIT)이다. 아직은 단맛보다는 신맛이 더 느껴지는 이 과일을 먼저 먹어봤다.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단맛도 있었고, 강렬한 신맛에 당황하기도 했다. 그 경험으로 모든 것을 내다볼 수는 없겠지만 블록체인의 가능성과 한계도 그려졌다.

## 스팀잇, 넌 누구냐

시작은 호기심이었다. 도대체 뭐지 궁금했다. 콘텐츠에 대한 평가만으로 돈이 된다는데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했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여느 블로그 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게시물들이 나열돼 있는데, '\$'모양의 아이콘에 숫자가 적혀 있었다. 순간 알았다. 말로 듣던 그 '돈'이구나.

스팀잇이 궁금하다면 일단 계정을 만들어보길 권한다. 계정을 만드는 건 쉬웠다. 정보를 입력하고 휴대폰으로 인증했다. 그리고 5일을 기다렸다. 스템잇은 계정이 승인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첫 게시물을 올리고 하루가 지나자 200 스템달러가 찍혀있었다. 스템잇에서는 게시물에 '보팅(voting)'을 할 수 있다. 페이스북의 '좋아요' 같은 추천 기능인데, 다른 소셜미디어와 다른 점이 있다면 추천에 '경제적 가치'가 부여된다는 점이다. 이 차이가 스템잇의 본질이다.

보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효과가 같지는 않다. 영향력이 높은 사용자의 보팅과 방금 계정을 만든 사용자의 보팅의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

다. '고래'라고 불리는 파워유저가 보팅을 눌러주면 순식간에 수십 스템달러가 올라간다. 보팅은 7일간 진행되는데, 7일이 지나고 나면 보팅 금액이 정산된다. 보팅 금액은 '스팀달러'라는 코인으로 정산되는데, 이 스템달러를 거래소에서 '원'으로 바꿀 수 있다. 물론 그냥 쌓아놓고 나중에 바뀌도 된다.

보팅을 한 사용자에게도 경제적 가치가 전달된다. 한 게시물에 대한 보팅 금액을 정산할 때 보팅을 한 사용자 몫으로 25%가 전달된다. 보팅을 한 사용자들이 자신의 영향력에 맞게 나눠 갖는다. 보팅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때문에 사용자는 보팅을 할 때 신중하게 된다. 진짜 좋은 콘텐츠, 혹은 많은 사람들이 보팅할 만한 콘텐츠를 고르게 되는 시스템이다.

페이스북을 해보면 게시물에 달리는 좋아요 숫자에 자꾸만 눈이 간다.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트위터도 그렇다. 스템잇에서는 자꾸만 보팅금액에 눈이 간다. 소셜미디어가 콘텐츠 시장에 '대중의 평판'이라는 개념을 도입시켰다면 스템잇은 대중의 평판에 '경제적 가치'를 입혔다. 좋은 콘텐츠라고 추천을 받는 것과 경제적 보상을 일치시킨 것이다. 이 개념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기존 소셜미디어에서는 아무리 추천을 받아도 콘텐츠에 달려있는 광고가 노출되지 않는 한 경제적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스템잇은 광고가 없어도 대중의 평판이 좋은 콘텐츠라면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 그래서 민중의소리는 돈을 벌었나?

지금까지 민중의소리는 여러 방식으로 콘텐츠를 게재했다. 처음에는 기사를 소개하는 멘트를 달고 원

문을 싣기도 했고, 민중의소리 사이트에는 없는 ‘스팀잇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어보기도 했다. 지금은 민중의소리 기사 중에 소개하고 싶은 것을 골라 설명하는 멘트 없이 기사 그대로 게재하고 있다. 초반엔 하루에 하나의 콘텐츠를 올렸고 최근엔 하루에 4~5개를 올리고 있다. 반응은 콘텐츠 별로 천차만별이다. 유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봤고, 다른 소셜미디어처럼 약간의 거리를 두기도 했다. 당연히 소통을 많이 할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분명했다. 몇 달간의 테스트를 끝내고 조만간 스팀잇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정책을 정리할 계획이다.

“스팀잇으로 돈 벌었어요?”

요즘 꽤 많이 듣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스팀잇은 아직 의미있는 수익을 보장할 만큼의 시장으로 형성되지 않았다. 스팀잇 전체 유저가 100만 명을 겨우 넘었다. 한국 유저는 10~2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콘텐츠 시장으로 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물론 지금도 스팀잇에서 꽤 의미있는 수익을 내는 유저들이 있다. 하지만 ‘경성 뉴스’만을 내보내는 민중의소리 콘텐츠로는 유의미한 수익을 내기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발견했다. 스팀잇이, 혹은 다른 그 어떤 블록체인 기반의 콘텐츠 시장이 형성된다면 콘텐츠 유통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예컨대 민중의소리는 페이스북에서 43만 명의 팬을 보유하고 있다. 스팀잇에서 한 콘텐츠에 보팅을 받는 숫자가 수백 명이면 수백 스팀달러 정도의 수입이 들어온다. 민중의소리 기사 중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받는 숫자가 수천 개인 경우가 하루에도 수두룩하다. 1만 개 이상이 들어올 때도 많다. 아주 기계적으로 적용해보면 한 기사에 1만

스팀달러의 수입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1스팀달러를 1달러로 계산해도 한 기사에 1만 달러, 즉 100만원의 수입도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물론 이 가능성은 스팀잇이 페이스북 수준으로 커졌을 때 얘기가. 역으로 말해 미래에 블록체인 기반의 콘텐츠 플랫폼이 페이스북 수준으로 성장한다면 콘텐츠 자체로 의미있는 수준의 수입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 설익은 과일의 신맛, 스팀잇에서 발견된 논쟁적 이슈들 \_\_\_\_\_

어뷰징은 콘텐츠가 유통되고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곳이면 어디든 등장한다. 대표적으로 포털이 그렇다. 한국에서는 네이버에서 주된 논점이고 글로벌하게는 구글에서 그렇다. 누군가는 어뷰징을 하려고 하고 운영자는 막으려 한다. 기존 포털에서 어뷰징 이슈가 알고리즘과 관련이 크다면, 스팀잇에서는 ‘고래의 횡포’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영향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용자가 횡포를 부릴 때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느냐가 주된 논점이다. 특히 자기 글에 자기가 보팅을 해서 많은 경제적 보상을 가져가는 ‘셀프 보팅’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뜨겁다. ‘담합 보팅’이라는 문제도 있다. 특정 사용자들이 서로의 콘텐츠에 보팅을 몰아줘서 경제적 보상을 받아가는 방식이다. ‘좋은 콘텐츠가 좋은 평판을 받고 그 결과 경제적 보상이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방해하는 행위들이다. 스팀잇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들 간에 상당한 논쟁이 이뤄지고 있다.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그 어디에서든 어뷰징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 노력으로 개선해가는 것이



고 그 노력이 지속적인 시스템 혁신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볼 때, 블록체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콘텐츠가 ‘박제’되는 시스템도 논쟁 지점 중 하나다. 스팀잇은 보팅 기간인 7일이 지나면 콘텐츠를 더 이상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게 박제된다. 이런 시스템은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콘텐츠가 ‘가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불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글이 특정 대상에 대해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자. 예컨대 ‘성폭력 2차 가해’의 내용이라고 판명이 돼도 그 글을 수정, 삭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잊힐 권리’를 침해하기도 한다.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스팀잇 운영진에게 특정 글을 삭제해야 한다고 의견을 보내면 검토 후 ‘블라인드’ 처리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데이터를 삭제할 수는 없다.

콘텐츠 업로드 용량에 제한이 있는 것도 요즘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스팀잇은 영향력

에 따라 올릴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다. 용량이 다 쓰고 나면 시간이 지나야 다시 글을 쓸 수 있다. 영향력이 적으면 동영상이나 사진 같이 큰 용량의 콘텐츠를 마음껏 올릴 수 없다. 물론 영향력을 ‘구매’하거나 ‘대여’할 수도 있지만, 요즘처럼 콘텐츠를 어디서든 마음껏 올릴 수 있는 시대에 선뜻 이해되지 않는 시스템이다.

‘박제’와 ‘용량 제한’은 스팀잇이 블록체인 자체에 기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블록에 담아 더 이상 고칠 수 없도록 한 뒤 유저들이 나눠 갖는 것으로 데이터 위변조를 불가능하게 만든 기술이다. 이 기술적 개념은 보안에는 상당히 유리한 반면 데이터 처리 속도가 느리고 처리 용량에 한계를 보이게 된다. 코인 거래정보 같은 아주 작은 용량의 데이터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콘텐츠를 유통하기엔 어울리지 않는 시스템이다. 박제되는 것도 블록체인에 직접 콘텐츠를 올려놓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때문에 스팀잇 이후에 설계되고 있는 코인 기반의 플랫폼 중

에는 콘텐츠의 내용을 블록체인과 분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스팀잇이 보여준 콘텐츠 기반 코인이코노미의 가능성

조금 어려운 개념으로 들어가 보자. 스팀잇은 게시물을 올리고 보팅을 하거나 받으면서 경제적 가치를 주고받게 설계됐다. 콘텐츠 제작자는 물론 콘텐츠 수용자에게도 경제적 보상이 있다. 콘텐츠 평가에 동참한 것만으로도 경제적 보상이 뒤따른다. 유저는 콘텐츠를 올려서 제작자로 보상을 받기도 하고 다른 콘텐츠에 대한 평가에 동참하고 콘텐츠 확산에 기여해 보상을 받기도 한다. 스팀잇은 경제적 가치를 주고받는 매개 역할을 '스팀'이라는 코인이 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런 설계를 '코인이코노미(CoinEconomy)'라고 부른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수많은 블록체인 코인들은 각기 어떤 방식으로 코인이코노미를 구현할 것인지 밝혀져 있는데, 그 내용이 담긴 문서가 '백서(Whitepaper)'다. 사람이 하고 있는 거의 모든 거래, 혹은 아직 거래해보지 않은 분야까지도 코인이코노미의 대상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코인들은 아직 상상 속에서 돌아갈 뿐 현실에서 구현되지 않았다. 스팀잇이 주목받는 이유는 사람들이 실제 사용하도록 구현된 몇 안 되는 코인이코노미이기 때문이다.

아직 100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작은 서비스지만 스팀잇은 '블록체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사람들은 이 안에서 콘텐츠에 대해 평가하고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고 나눠 갖는다. 맛집 정보를 모으고 그 정보에 가치를 매기고 정보를 모은 사

람에게도 경제적 보상을 한다. 코인을 통해 상거래도 벌어진다. 농산물을 팔기도 하고 커피숍에서 커피를 살 수도 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콘텐츠에 대한 경제적 보상 시스템이다. 스팀 이후에 발표되는 수많은 콘텐츠 혹은 미디어 관련 코인들은 거의 스팀의 설계를 변형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스팀잇이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새로운 대세가 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 블록체인의 '맛'을 보여주긴 했지만 블로그 서비스라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블로그 스타일의 콘텐츠 플랫폼은 소셜미디어들과 결정적 차이가 있는데 바로 콘텐츠에 '제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정제된 '글'을 올리도록 유도하고 있다. 콘텐츠 유통 플랫폼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이라는 '타임라인' 중심의 소셜미디어 1세대에서 스냅챗이나 인스타그램의 스토리 기능처럼 '떴다 사라지는' 소셜미디어 2세대로 넘어가고 있다. 트위터는 '지저귀다'는 어원처럼 제목이 없는 '날글'을 쓰는 시대를 열었다. 페이스북 시대로 넘어오면서 유저들이 올리는 콘텐츠에서도 사진과 동영상이 중심이 되기 시작했다. 스팀잇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의 스팀잇으로는 콘텐츠 유통의 중심이 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도 스팀잇은 콘텐츠의 추천과 경제적 가치를 연결하는, 콘텐츠 기반의 코인이코노미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힌 서비스임은 분명하다.

## '뉴스'로 코인이코노미는 가능한가

코인이코노미는 뉴스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스팀잇을 시작한 이후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이었다. 이 질문의 답을 구하려면 먼저 뉴스가 자체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시장을 형성

할 수 있어야 코인이코노미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시대로 접어들면서 콘텐츠 시장의 경계는 무너지고 있다. 검색하기 위해 포털에 들어갔다가 뉴스를 보는 것인지 뉴스를 보기 위해서 포털앱을 여는 것인지 사용자들은 명백하게 구분할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뉴스만을 골라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동영상과 뉴스 동영상은 그저 수많은 동영상 중 하나다. 뉴스 제공자들은 뉴스라는 콘텐츠를 구분할지 모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구분해서 소비하지 않는다. 즉 뉴스는 콘텐츠 시장 전체의 일부이지 뉴스만 유통되는 시장은 없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뉴스는 실시간으로 생산되는 새로운 콘텐츠다. 그 강력한 속성 덕분에 뉴스는 콘텐츠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콘텐츠가 있는 곳에는 늘 뉴스가 있다. 사용자들에게 늘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털이 쉽게 뉴스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페이스북이 성공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사용자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뉴스를 접했기 때문이다. 지인들이 추천한 뉴스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을 얻으면서 페이스북은 삼시간에 사용자들을 확보했다. 사용자들을 확보한 콘텐츠 플랫폼

들은 광고를 빨아들었다. 그 광고는 원래 뉴스의 원천이었던 신문과 방송의 것이었다. 광고시장이 콘텐츠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신문과 방송의 수익이 줄었다. 콘텐츠 플랫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뉴스는 역으로 플랫폼이 성장할수록 수익기반이 줄어들어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었다.

이 과정에서 수용자들은 뉴스에 대한 지불의사가 현격히 줄어들었다. 뉴스는 돈을 내고 보는 콘텐츠가 아니라 플랫폼에 늘 제공되는 '기본 콘텐츠'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뉴스만을 가지고 코인 이코노미를 형성하겠다는 것은 어쩌면 무모한 도전은 아닐까.

수용자들이 뉴스에 전혀 지불의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종이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고 있다. 인터넷에서도 지불의사가 있는 수용자들이 꽤 있다. 민중의소리에는 정기후원이라는 이름의 구독모델이 있다. 종이신문이 없고 인터넷을 통해서만 뉴스를 제공하는 매체들은 대개 정기후원을 받고 있다. 대부분 은행계좌 CMS나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쓴다. 민중의소리에는 기자후원이라는 이름으로 콘텐츠에 후원하는 모델도 있다. 이것 역시 일종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인데, 카





카오의 스토리펀딩과 비슷한 개념이다. 스토리펀딩이나 민중의소리 기자후원의 경험을 보면 콘텐츠를 보고 ‘결제’하는 수용자들도 상당히 많다. 민중의소리의 경우 월별로 후원액이 쌓이는 시스템인데, 해당 월에 좋은 기사를 내면 후원액이 꽤 쌓인다. 많이 받는 경우에는 100만 원을 훌쩍 넘길 때도 있다.

이런 후원이나 지불 모델들을 코인으로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스팀잇을 만든 스팀 진영에서 ‘SMT’라는 개념을 선보였다. 블록체인 기술이 없어도 스팀 기반으로 누구나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스팀이라는 큰 코인이코노미 안에서 특정한 서비스에 특화된 화폐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이 토큰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토큰이코노미를 형성할 것인지를 밝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민중의소리에서 정기구독이나 콘텐츠 후원에 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고 토큰을 만드는 것이다.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스팀의 SMT에 상당한 관심을 표하고 있다. 블록체인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문제는 민중의소리 토큰이 규모를 형성할 수 있느냐다. 한국 뉴스사이트 중 정기후원 모델로 성공한 사례로 뉴스타파가 꼽힌다. 약 4만여 명의 후원자를 끌어 모았다. 이들이 모두 토큰으로 후원한다고 해도 4만 명이다. 고작 4만 명이 쓰는 화폐가 화

폐로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 그냥 지배적인 코인을 후원하거나 구독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영어권의 매체라면 한번 시도해볼 수 있을지 몰라도 한국에 서는 참 쉽지 않은 일이다.

## 기존 저널리즘의 한계를 극복하는 아이디어

‘시빌(Civil)’이라는 서비스가 준비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뉴스미디어를 표방하고 있다. 자립 가능한 저널리즘 모델을 만들어보겠다는 야심찬 시도다. 잠깐 들여다보자.

시빌에는 일단 뉴스제작자가 있고 독자가 있다. 언론계 전문가로 구성된 저널리즘 자문위원회가 있고 뉴스룸 관리자와 팩트체커가 있다. 시빌에 가입하면 ‘CVL’이라고 불리는 토큰을 살 수 있다. 이 토큰은 기사를 볼 수 있는 열람권이기도 하고 시빌 내부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영향력이기도 하다.

시빌에는 누구나 뉴스룸을 만들 수 있다. 뉴스 제작자가 취재 계획과 목표를 올리면 투표를 통해 경쟁을 하고 경쟁에서 선발된 제작자의 뉴스룸이 만들어진다. 정확히는 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뉴스룸 관리자는 애초 결정된 뉴스룸의 현장에 따라 뉴스룸을 관리한다. 콘텐츠가 제작되면 이를 퍼블리싱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전문가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이들은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답합이 불가능하다. 팩트체커들은 사실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저널리즘 자문위원회는 저널리즘 윤리가 잘 지켜지는지 살펴보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 참여자들은 서로 자기 역할을 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나눠갔다.

시빌은 지금껏 저널리즘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

들을 해결하는 아이디어들로 가득하다. 일단 매체 내부의 권력집중을 해체했다. 뉴스 제작자들의 취재계획을 ‘데스크’에게 발제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에게 공표한다. 독자들의 관심과 후원을 받으면 취재에 들어가는 것이다. 최근 많이 시도되고 있는 집단지성을 통한 팩트체킹을 전면적으로 도입했다. 뉴스룸 외부에 팩트체커를 둔 것이다. 대신 팩트체커들은 정확도를 심사받고 이는 기록으로 남는다. 뉴스 제작자의 신뢰도는 물론 팩트체커의 신뢰도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애초에 뉴스를 보겠다고 한 독자들의 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자립가능한 뉴스 제작 시스템이다.

시빌은 2018년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뉴스로 코인이코노미가 형성 가능한지 중요한 시도가 될 전망이다. 시빌이 성공한다고 해도 과연 한국에 적용가능한지는 불투명하다. 일단 시빌의 성공이 저널리즘 환경을 다 바꿀 가능성은 적다. 좋은 매체가 하나 더 등장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마치 소셜미디어 시대에 등장한 보스(VOX)나 쿼츠(Quartz) 등도 좋은 매체와 사례로 꼽히지 미국 저널리즘을 바꿨다고 보긴 어려운 것처럼 말이다. 또 다른 문제는 언어다. 다른 서비스와 다르게 뉴스는 한국어라는 ‘언어’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한국어 사용자는 많아야 6천만이다. 실제 인터넷 사용자는 3천 5백만~3천 8백만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 중 뉴스를 위해 투자하는 인구는 얼마나 될까.


### 저널리즘, 블록체인이란 ‘다가올 환경’에 적응해야

블록체인이 콘텐츠 시장을 바꿀까.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지만 ‘확정적’이라고 예

단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블록체인 시대가 오든 그렇지 않든 그 시대를 외면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뉴스만을 가지고 코인이코노미를 설계하긴 쉽지 않다. 하지만 콘텐츠 시장을 기반으로 코인이코노미가 설계되고 유저 확보에 성공한다면 그 시장에서 뉴스는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뉴스는 그 자체로 구매력이 있는 콘텐츠 영역은 아니지만 콘텐츠 시장에서 뉴스 콘텐츠들은 상당히 많이 소비되고 구매(혹은 후원)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언론사인 JTBC는 고전적 의미의 저널리즘, 손석희 사장 표현에 따르면 ‘저널리즘의 본령’인 취재와 보도에서도 박수를 받고 있지만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한 언론사로 꼽히기도 한다. 방송 뉴스만이 아니라 소셜미디어에 서만 볼 수 있는 라이브를 하고 있고 모바일에 맞는 스타일의 클립들도 생산한다. ‘좋은 콘텐츠’라는 필요조건에 ‘새로운 스타일과 전략’이라는 충분조건이 만나 지금의 영향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블록체인에 저널리즘이 대응한다는 것이 꼭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매체를 만들거나 자체의 서비스를 만드는 것만은 아니다. 소셜미디어가 콘텐츠 중심이 됐다고 해서 언론사가 소셜미디어를 만드는 도전을 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블록체인 시대가 온다는 것은 언론의 환경이 변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시대의 ‘맛’을 느껴보기 위해서라도 스템잇 계정을 한 번쯤 만들어보길 권한다.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단맛’에 일단 찌릿함을 느낄 수 있다. 

# 민사판결의 사실 인정과 허위의 사실 적시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씨 ◇◇공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의 사무총장으로서 2014. 4.경 및 2014. 5.경 두 차례에 걸쳐 ‘○○씨의 적통’이라는 제목의 두 권으로 이루어진 책(이하 ‘이 사건 책자’)을 각 출간하여 안내문과 함께 ○○씨 각종 계파 회장, 임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책자와 안내문에는 ‘☆☆공 공소의 1이 ▽▽공 공소의 2의 만형 또는 공소의 3의 장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거나 ‘☆☆공이 실존인물이라고 볼 확실한 근거가 없는데도 그 후손들이 실존성을 조작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공 공소의 1은 ▽▽공 공소의 2의 만형이고, 그러한 사실은 종원지위부존재확인 사건에 관한 민사판결에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씨 ☆☆공과대정회 종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원심은 ① 민사재판에서 이 사건 종중이 수집하여 제출한 증거와 자료를 기초로 이루어진 판결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② 민사재판에서 이 사건 종중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논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는데도, 피고인은 판결 결과와 전혀 상반되는 내용의 이 사건 책자 및 이를 요약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는 점, ③ 이 사건 책자가 공소의 1이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볼 만한 확실한 근거가 없고 가첩 등에 기록된 공소의 1의 실존성은 대부분 조작된 것이라며 공소의 1이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까지 기재하였으며, 마치 일부 후손들이 ○○씨에 입보하기 위한 불순한 목적으로 공소의 1의 상계(上系)를 조작한 것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책자와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

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인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다.<sup>1)</sup>

## II. 대상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원심에 대한 파기환송판결을 내리면서 다음과 같이 논리를 전개하였다.

첫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 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어떠한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견해나 그 근거를 비판하면서 사용한 표현의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고 하였다.

셋째, 민사재판에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그리고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에 따라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민사판결의 사실 인정이 항상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민사판결을 통하여 어떠한 사실 인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그와 반대되는 사실의 주장이나 견해의 개진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 적시’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이는 판결에 대한 자유로운 견해 개진과 비판, 토론 등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해석이 되어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① 공소의 1의 상계(上系)는 그에 관한 논쟁이 계

1) 수원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노4270 판결

속 있어 왔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실이라고 확실히 단정할 수 없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종종이 제기한 민사재판에서도 법원은 양측이 근거로 내세우는 족보 중에서 여러 파의 후손들이 참여하여 작성한 ○○씨 5대 대동보의 기재가 증명력이 높다고 보아 이를 근거로 공소외 1이 공소외 3의 아들로 보인다는 사실 인정을 하였을 뿐이라는 점, ② 이 사건 책자의 발간주체, 집필자, 구성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책자를 수령한 사람들은 책자의 글과 표현 등이 족보 등 문헌에 기초한 연구를 통해 어떠한 주관적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것임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③ 공소사실에서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문제되는 부분은, 반대 주장의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하는 평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별다른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공의 후손들이 이를 조작하였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함께 사용한 것 역시 ‘☆☆공 후손들의 주장은 별다른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는 내용을 감정적·과장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책자에서 피고인 등의 주장과 반대되는 ☆☆☆공파대정회의의 입장과 그 주장내용, 근거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그간 진행되어 온 민사소송의 경과 및 판결 내용 등에 대하여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책자에서 문제된 표현은 결국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이나 견해 또는 주장에 해당하며 이를 강조하거나 달리 표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단정하는 형태로 서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III. 해설


대상판결의 쟁점과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첫째,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하는 방법에 관한 부분이다. 우리나라 ‘명예훼손법’의 기본구성요건 중의 하나는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 적시 여부’이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된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데,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의견 구분론’에 따르면, 의견표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진술이 사실의 적시인지 혹은 의견표현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대법원은 어떤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둘째,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

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및 어떠한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견해나 그 근거를 비판하면서 사용한 표현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어떠한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견해나 그 근거를 비판하면서 사용한 표현의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고 하였다.

셋째,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민사판결을 통하여 어떠한 사실 인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그와 반대되는 사실의 주장이나 견해의 개진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서 '허위의 사실 적시'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사실 이 판결의 의의는 이 부분에서 발견될 수 있다. 즉 민사판결에서의 사실 인정이 항상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느냐의 문제와 관련하여서, 매우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 판결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사판결의 사실 인정이 항상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민사판결을 통하여 어떠한 사실 인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그와 반대되는 사실의 주장이나 견해의 개진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 적시'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는 민사판결의 사실 인정이 항상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해 버리면, 판결에 대한 자유로운 견해 개진과 비판, 토론 등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해석이 되어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법원 판결의 무오류성(無誤謬性)을 부인함과 동시에 법원 판결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명예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격권과 언론·출판의 자유 사이의 충돌의 균형과 조화에 관한 법을 '명예훼손법'이라고 한다.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 보호와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가치 간의 비교형량에 있어서 대법원은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용·해석 등을 통해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확장하는 기초를 유지해 왔다. 여기서 다루는 판결도 언론·출판의 자유 확장이라는 기존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법원 판결의 무오류성을 부인함과 동시에 법원 판결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판결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 한국 개인정보보호법과의 비교를 통한 EU GDPR의 이해

박노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 서론

데이터(data)는 상품, 서비스, 자본, 사람에 이어서 새로운 생산요소가 되며, 특히 정보사회 내지 디지털경제에서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과 그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개인정보의 처리에서 해당 개인, 즉 정보주체의 보호는 디지털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신뢰의 기초가 된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 가장 적극적으로 체계적인 법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다. EU는 ‘디지털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의 완성을 추구하면서 그동안 적용 중인 ‘1995년 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DPD) 기반의 개인정보보호법제도를 개정하는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sup>1)</sup>을 채택하였다.

1995년 지침을 대신하는 GDPR은 2018년 5월 25일 적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정보주체인 개인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컨트롤러의 책임과 편의를 제고한다. 또한, GDPR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는 균형을 추구한다.

1)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Text with EEA relevance), OJ L 119, 4.5.2016, 1-88.

2) GDPR의 일반적 이해는 박노형 외 (2017), <EU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중심으로>, 서울: 박영사 참조.

아래에서는 한국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간략한 비교를 통하여 GDPR을 이해하고자 한다.<sup>2)</sup>

## 2. EU 개인정보보호법체제

### 1) 개인정보보호법체제의 구성

EU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인 GDPR에 상응하여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중인데, 이들 법과 함께 다른 주요한 법들이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다. 첫째, 2016년 5월 24일 발효한 GDPR이 2018년 5월 25일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1995년 지침은 폐기되었다. EU회원국들은 1995년 지침을 각자의 국내법 절차를 통하여 이행하고 있었는데, 회원국들마다 동 지침의 이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일정 부분 달리 규정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시장통합이 완성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회원국들 사이의 개인정보보호에서의 법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29조 작업반(Article 29 Working Party)은 동의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다수의 가이드라인 또는 의견을 채택하고 있었다.

한편,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0465호)은 2011년 3월 29일 제정되고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1995년 지침도 참조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

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서, 동 법은 개인정보보호의 기본법이 된다.<sup>3)</sup> 또한, 2011년 9월 30일 시행된 6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행정안전부 고시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 유형 및 예방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을 보완하고 있다.

둘째, 2016년 4월 8일 EU이사회는 GDPR과 함께 소위 ‘법집행 지침(Law Enforcement Directive)’을 채택하였고, 동년 4월 16일 유럽의회도 GDPR과 동 지침을 채택하였다. 법집행지침<sup>4)</sup>은 형사법집행당국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EU시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기본권 보호를 규정한다. 동 지침에 따라 피해자, 증인 및 범죄혐의자의 개인정보가 적법하게 보호되고 범죄와 테러에 대한 국경 간 협력이 촉진된다. 법집행 지침은 2016년 5월 5일 발효되었고, 회원국들은 2018년 5월 6일까지 동 지침을 국내법 절차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한편, 한국의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956호)’이 2017년 3월 27일 제정되어 검사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같은 날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957호)’이 제정되어 군검찰 등의 위 세 가지 경우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가 마련되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

4) Directive (EU) 2016/68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by competent authorities for the purposes of the prevention, investigation, detection or prosecution of criminal offences or the execution of criminal penalties,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8/977/JHA, OJ L 119, 4. 5. 2016, 89–131.



셋째, 2017년 1월 유럽위원회는 2002년 처음 채택되고 2009년 개정된 ‘e-Privacy지침’을 개정하는 쿠키법(Cookie Law)이라 불리는 일명 ‘e-Privacy규칙(Regulation on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ePR)’ 초안을 발표하였다. ePR은 전자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시장 참여자의 공정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GDPR의 주된 목적은 개인정보 보호이고, ePR의 주된 목적은 통신비밀을 포함한 사생활 보호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개인정보가 되는 전자통신데이터(전자통신내용과 전자통신메타데이터)에 관하여 ePR의 해당 규정이 GDPR에 대하여 특별법이 되어 우선 적용된다. 한편,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제4장)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sup>5)</sup> 제4장의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특별 규정이 되지만,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기업의 업종이나 규모, 법인이나 사

업자 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의 동 규정은 디지털경제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중요한 비중을 가진다. 그런데 제5장의 규정은 이용자로 하여금 사생활 침해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사생활 침해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이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의 제5장의 규정은 EU의 ePR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GDPR의 법적 지위

GDPR은 EU법의 형식으로서 규칙(regulation)에 해당하여 회원국에서 별도의 국내이행 절차 없이 EU 전역에서 직접적으로 적용된다.<sup>6)</sup> GDPR의 궁극적인 해석 권한은 회원국 법원과 EU사법법원에 주어진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정보주체는 GDPR에 직접 근거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상

5) 2001년 1월 16일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도입하면서 전부 개정되었다.

6) 1995년 지침은 EU법의 형식으로서 지침(directive)에 해당되어 회원국에서 별도의 국내이행 절차를 통하여 그 내용이 이행되었다.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컨트롤러는 GDPR에 직접 근거하여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GDPR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자신의 국내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GDPR은 공공당국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수준이나 피고용인의 개인정보 처리 등 많은 경우에 EU 또는 회원국 법에 따른 별도의 규정이 허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적인 규정은 각 회원국의 개별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GDPR과 함께 채택된 ‘법집행 지침’은 지침으로서 회원국들 각각의 개별이행이 요구되어서 역시 각 회원국의 개별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예컨대, 독일은 GDPR이 허용한 특별한 개별규정을 마련하고 법집행 지침의 개별이행을 위하여 회원국들 중 처음으로 2017년 7월 5일 독일개인정보보호수정법(German Data Protection Amendment Act: GDPAA)을 채택하였다.

### 3) GDPR의 내용 구성

GDPR은 본문 11개 장 99개 조문과 상설 173개 항으로 구성된다.<sup>7)</sup> 72개 상설과 8개 장 34개 조문으로 구성된 1995년 지침에 비교하여 GDPR의 규정은 대폭 확충된 것이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9개 장 76개 조문 및 부칙으로서 GDPR이 더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비교할 때, GDPR은 역외적용(제3조), 잊힐 권리(제17조), 개인정보 이동권(제20조), 프로파일링(제22조),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제35조 등), 개인정보보호책임

자(제37조 등), 행동규약과 인증(제40조 등), 제3국 또는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제44조 등), 독립된 감독당국(제51조 등) 등 개인정보보호에서 더욱 강화되거나 새로운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비교할 때, GDPR은 협력(제60조 등), 일관성(제63조 등), 유럽개인정보보호 이사회(제68조 등), 특정한 처리 상황에 관련된 규정(제85조 등), 위임입법과 이행입법(제92조 등) 등 EU 28개 회원국들의 통합적 특성을 반영한 규정을 두고 있다.

### 4) GDPR의 목적

GDPR은 다음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sup>8)</sup> 첫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연인의 보호이고 둘째,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이다. 그러나, EU 역내에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연인 보호에 연계되는 이유로 제한하거나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GDPR은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즉 활용을 개인정보보호와 동일한 가치로서 인정하고 있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목적을 규정한다.<sup>9)</sup> 이렇게 동 법은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즉 개인정보의 활용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그 목적으로서 명시하지 않는 점에서 동 법이 개인정보 보호만을 위하여 경직되었다는 비판을 받게 되어 있다.

7) GDPR의 본문은 전체 2/3 분량이고, 상설은 1/3 분량이다. 상설(recital)은 본문의 조항과 달리 그 자체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항의 해석에 도움이 되도록 해당 조항의 정책적 배경과 이유, 사례 등을 제시함으로써 본문 조항의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8) GDPR 제1조.

9)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

### 3. GDPR의 주요 개념

아래에서 GDPR의 개인정보 등 주요 개념을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개념과 비교한다.

#### 1) 개인정보

GDPR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와 관련된 모든 정보라고 정의하면서, 식별가능한 자연인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특히 이름, 식별번호, 위치 정보 등 온라인 식별자를 참조하거나, 그 자연인의 신체적, 생리적, 유전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또는 사회적 정체성에 특유한 하나 이상의 요소를 참조하여 식별될 수 있는 자'라고 명시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다.<sup>10)</sup> 특히 온라인 식별자가 개인정보의 예로써 명시되어서 GDPR 제3조의 역외적용에 따라 인터넷 등에 의하여 EU시장에 진입하는 EU 역외에 설립된 기업 등도 GDPR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정의하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한다.<sup>11)</sup> GDPR의 개인정보 정의에 비교하면 단순하지만,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여 GDPR의 명시적 예도 한국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민감정보

GDPR은 특수한 범주의 개인정보, 즉 민감정보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GDPR은 제9조에서 일반적인 민감정보를, 제10조에서 범죄경력과 범죄행위에 관련된 개인정보를 별도로 규정한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민감정보를 규정하고, 동 시행령으로 유전정보와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포함하는데, 전체로서 GDPR의 위 두 가지 유형의 민감정보와 일치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GDPR은 '인종이나 민족 기원'을 드러내는 개인정보와 '자연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목적의 바이오인식정보'를 민감정보로서 명시한다. 한국에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는 추세 및 바이오기술의 발전을 고려할 때 이 둘 두 유형의 개인정보도 민감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 3) 정보주체

GDPR은 정보주체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개인정보에 관한 정의에서 '식별된 또는 식별가능한 자연인'이라고 확인한다. 1995년 지침과 달리 GDPR은 '죽은 사람(deceased person)'의 개인정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sup>12)</sup>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는데, 이는 '알아본', 즉 '식별된'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GDPR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의 정의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규정하여서 '죽은 사람'의 개인정보에 동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10) GDPR 제4조 제1호.

11)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12) GDPR 상설 제27항.

#### 4) 컨트롤러

GDPR의 컨트롤러(controller)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자연인이나 법인, 공공당국, 에이전시 또는 다른 기관이다.<sup>13)</sup> 컨트롤러는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필요는 없다. 컨트롤러는 직접 또는 제3자, 즉 프로세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된 원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의 준수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sup>14)</sup> 또한 컨트롤러는 개인정보 처리가 GDPR에 따라 수행되는 것을 보장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적 및 관리적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sup>15)</sup>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GDPR의 컨트롤러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라는 양태에 중심을 둔다면, GDPR은 처리 목적과 수단의 결정에 중심을 두기 때문이다.<sup>16)</sup> GDPR의 컨트롤러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sup>17)</sup>

#### 5) 프로세서

GDPR의 프로세서(processor)는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이다.<sup>18)</sup> 컨트롤러는 GDPR 요건을 충족하고 적절한 기술적 및 관리적 조치를 이행한다는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는 프로세서만 이용해야 한다.<sup>19)</sup>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점에서 프로세서는 컨트롤러의 이익을 위하여 컨트롤러와 위탁에 관한 계약 등이 필요하다.<sup>20)</sup> 프로세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컨트롤러가 일체의 책임을 지는 점에서 컨트롤러는 프로세서의 개인정보법령 준수를 감독하여야 한다.<sup>21)</sup> 프로세서는 컨트롤러의 사전 허가를 받아 다른 프로세서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재위탁할 수 있다.<sup>22)</sup> GDPR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컨트롤러와 프로세서가 이행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고려하여 각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부과된다.<sup>23)</sup>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업무 수탁자는 프로세서와 같이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점에서 GDPR의 프로세서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위탁자인 개인정보처리자가 GDPR의 컨트롤러와 완전하게 동일하

13) GDPR 제4조 제7호.  
 14) GDPR 제5조 제2항.  
 15) GDPR 제24조 제1항.  
 16) 박노형 외 (2017), <EU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중심으로>, 서울: 박영사, 37.  
 17)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및 제3장 참조.  
 18) GDPR 제4조 제8호.  
 19) GDPR 제28조 제1항.  
 20) GDPR 제28조 제3항.  
 21) GDPR 제28조 제3항(h).  
 22) GDPR 제28조 제2항.  
 23) GDPR 제83조 제2항(d).



지 않기 때문이다.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sup>24)</sup>

## 6) 처리

GDPR의 처리는 자동화된 수단이나 비자동화된 수단, 즉 수기 여부를 불문한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처리 수단의 자동화 여부를 명시하지 않으나,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되면 개인정보파일이 됨으로써 수기 개인정보도 포함한다.<sup>25)</sup> GDPR은 수기 처리에 해당하는 파일링시스템(filing system)을 별도로 정의하는데<sup>26)</sup>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파일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GDPR의 처리는 수집부터 파기까지 다양한 처리 유형을 예로써 명시한다.<sup>27)</sup>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도 GDPR과 같이 개인정보의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한 처리 유형을 예로써 명시한다.<sup>28)</sup> GDPR은 처리를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의 집합물에 대하여 수행되는 모든 작업 또는 일련의 작업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작업은 포괄적 처리로서 인정된다. 그러나,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파기까지 구체적 유형을 명기

한 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라고 규정하여, 이렇게 명기된 처리 유형과 유사한 행위만을 포함한다고 좁게 해석될 수 있다.

## 7) 개인정보보호책임자

GDPR의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는 다음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개인정보보호책임자(data protection officer)를 지정해야 한다.<sup>29)</sup> 첫째, 처리가 공공당국 또는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인데, 사법적 지위에 따른 법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둘째,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핵심적 활동이, 그 성격, 범위 및 목적에서, 대규모로 정보주체에 대해 정기적이고 조직적인 감시를 요구하는 처리작업으로 구성되는 경우이다. 셋째,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핵심적 활동이 특수한 범주의 정보 및 범죄경력과 범죄행위에 관련된 개인정보, 즉 민감정보의 대규모 처리로 구성되는 경우이다. 넷째, EU 또는 회원국법이 요구하는 경우이다. GDPR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전문적 자질, 특히 개인정보보호법과 실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직무를 완수할 능력에 근거하여 지정되어야 한다.<sup>30)</sup>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직원일 수 있고, 또는 서비스계약에 근거하여 직무를 완수할 수 있는 자로 볼 수 있다.<sup>31)</sup>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요구한다.<sup>32)</sup> 공공기관은 다양한 기준에 해당하는 다양한 공무원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고,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 또는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

24)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6항.

25)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4호 참조.

26) GDPR 제4조 제6호.

27) GDPR 제4조 제2호.

28)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호.

29) GDPR 제37조 제1항 및 제4항.

30) GDPR 제37조 제5항.

31) GDPR 제37조 제6항.

32)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

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sup>33)</sup>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GDPR의 경우와 달리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어도 지정될 수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 8)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적 목적의 추가적 처리

GDPR은 ‘목적제한 원칙’에 따라 수집된 목적에 따른 처리를 요구한다.<sup>34)</sup>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적 목적의 추가적 처리는 ‘최초의 목적(initial purposes)’과 양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예외가 허용된다.<sup>35)</sup> ‘공익을 위한 기록보존 목적(archiving purposes in the public interest)’과 관련하여, 공익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당국 또는 공공·민간 기관이 수행하는 기록물의 획득, 보존, 평가, 편찬, 기술, 교환, 홍보, 배포, 제공은 목적 외 추가처리로서 허용된다.<sup>36)</sup> ‘과학적 연구 목적(scientific research purposes)’의 개인정보 처리는 ‘폭넓게(in a broad manner)’ 해석되어야 하는데, 기술의 발전과 실현,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투

자연구, 공중보건 분야에서 시행된 공공보건연구를 포함한다.<sup>37)</sup> 따라서 민간부문의 R&D의 목적으로 원래의 수집된 목적과 다른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역사적 연구(historical research)’에는 족보나 인명기록부 등 혈연관계나 계보를 밝히는 계보적(genealogical) 연구가 포함된다.<sup>38)</sup> 이러한 세 가지 목적의 처리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위하여 적절한 안전장치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그 안전장치들은 가명처리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가 구비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sup>39)</sup>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한다.<sup>40)</sup> GDPR과 달리 개인정보보호법은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명시하지 않으면서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대신 학술연구 목적을 명시하지만, ‘등의 목적’이라 규정한 점에서 통계작성이나 학술연구에 상응하는 목적의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의 제3자 제공이 허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GDPR은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등 세 가지 목적의 처리에 대하여 가명처리 등 안전장치의 적용을 받도록 요구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특정 개인



3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34) GDPR 제5조 제1항(b).  
 35) GDPR 제5조 제1항(b).  
 36) GDPR 상설 제158항.  
 37) GDPR 상설 제159항.  
 38) GDPR 상설 제160항.  
 39) GDPR 제89조 제1항.  
 40)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

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을 의미하는 점에서 가명처리가 아닌 익명처리가 되어 보다 엄격한 안전장치의 적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41)</sup> GDPR의 예를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 외 처리의 예외로서 기록보존과 과학적 연구 목적 등을 명시하는 입법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목적 외 처리의 예외를 전체적으로 ‘공익적’ 차원에서 한정하게 되면 개인정보 활용이 그만큼 제한될 것이다. 이러한 GDPR의 규정을 새로이 도입할 때 해당 규정의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면서 전체적인 법제도적 일관성과 일체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 9) 가명처리

GDPR에서 처음 도입된 가명처리(pseudonymisation)는 추가정보의 이용 없이 개인정보가 더 이상 특정 정보주체에게 귀속될 수 없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sup>42)</sup> 가명처리를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에서의 정보주체에 대한 위협이 저감될 수 있다.<sup>43)</sup> 개인정보의 유용성을 유지하면서 프라이버시를 제고하는 기법인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처리의 암호화와 함께 ‘적절한 안전장치’의 예가 된다.<sup>44)</sup> 따라서 가명

처리를 활용하는 컨트롤러에게 상당한 부담이 감경된다. 한편, 가명처리는 다른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sup>45)</sup> 가명처리된 개인정보, 즉 가명 정보는 여전히 GDPR의 적용을 받으므로, 가명정보의 처리도 GDPR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최근 국내에서 GDPR의 예를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에서 가명처리를 새로이 도입하는 입법안이 제시되고 있다.

## 10) 과징금

GDPR은 위반된 규정의 중요도에 따라 최대 1천만 유로 또는 사업자의 경우 이 금액과 전년도 세계매출액의 2%까지 중에서 더 큰 금액/최대 2천만 유로 또는 사업자의 경우 이 금액과 전년도 세계매출액의 4%까지 중에서 더 큰 금액의 과징금(administrative fines)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sup>46)</sup> 2016년 미국 대선에서 Facebook의 이용자 개인정보의 제3자 불법사용에 대하여 GDPR이 적용되기 전의 영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50만 파운드(7억 4천만 원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GDPR이 적용되면 Facebook의 2017년 세계매출액 400억 달러의 4%인 16억 달러(1조 7천억 원 상당)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sup>47)</sup>

41) 표준지침 제8조 제4항.

42) GDPR 제4조 제5호.

43) GDPR 상설 제28항.

44) GDPR 제6조 제4항(e).

45) GDPR 상설 제28항.

46) GDPR 제83조.

47) Kevin Townsend (2018, 4, 2). Would Facebook and Cambridge Analytica be in Breach of GDPR?. (SecurityWeek). URL: <https://goo.gl/tcYWHR>




그러나, 이러한 과징금의 규정은 부과될 수 있는 최대한을 언급할 뿐이고 실제로 부과되는 과징금의 수준은 각 사건마다 다르고 그 수준도 최대치가 되지 않을 것이다.<sup>48)</sup>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벌금, 과태료 및 과징금 같은 다양한 경제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고, 벌금은 형사법상 금전적 제재 수단이며, 과태료는 일정한 기준이나 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행위를 구분하여 최고 1억 원, 5천만 원, 3천만 원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최고 5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에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정보통신망법은 과징금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범위가 넓고 또 부과액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 4. 결어

GDPR은 1995년 지침의 채택 이후 특히 인터넷의 보편적 사용 등 과학기술적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GDPR의 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실제로 부과될 경우 해당 기업 등에 대한 엄청난 수준의 타격 가능성을 놓고

GDPR이 미국의 IT기업들을 견제하려고 채택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EU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서 GDPR은 기본적으로 EU 내의 기업 등 컨트롤러에게 적용되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특히 GDPR은 소위 제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정보주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등 컨트롤러의 개인정보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민주 사회의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개인과 사회의 이익을 균형되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GDPR은 1995년 지침과의 관계에서 ‘발전적’인 것이지 ‘혁명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sup>49)</sup>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하여 컨트롤러를 신뢰할 수 없다면 궁극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빅데이터 분석기술과 이에 기반한 디지털경제는 활성화될 수 없을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정보주체인 개인은 물론 그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도 모두 국민인 점에서 개인도 기업도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GDPR은 EU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물론 제3조의 역외적용을 통하여 EU에 설립되지 않은 한국 기업 등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GDPR의 적용을 받게 되는 한국 기업 등은 GDPR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이다. 마침 한국 정부는 GDPR의 개인정보 활용을 도모하는 제도를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경제의 국제환경에서 개인정보의 국제적 이전이 현실이 된 지금,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세계적 기준이 되고 있는 GDPR의 주요 규정이 우리 국내법에 도입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 점에서 GDPR의 올바른 이해가 요구된다. 

48) GDPR 제83조 제2항 참조.

49)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2017). Blog: GDPR is an evolution in data protection, not a burdensome revolution. URL: <https://goo.gl/HSEy1p>

# 언론보도에 이해관계가 개입할 때

임영호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다시 선거의 계절이 왔다. 지방 선거와 보궐선거에서 여러 언론인들의 이름도 언론보도에 오르내렸다. 수십 년간 보아오던 익숙한 풍경이지만, 올해는 언론계의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 장면들이 유독 눈에 거슬린다. 아마 최근 주류 언론사까지 경영의 위기를 맞을 정도로 여건이 나빠졌고, 윤리적으로도 시민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처지이기 때문일 것이다.

언론인의 정치권 진출은 공직 취임이나 출마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현직 언론인으로 활동하던 시절의 진실성이 의심받게 된다는 점에서 논란거리가 된다. 언론인은 현직에서도 큰소리치면서 지내다가 퇴직 후에도 으레 힘 있는 자리로 가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인도 많다. 이 과정이 아무 노력없이 주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직 시절에 후일을 위한 사전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미래의 직장인 취재원과 유착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그냥 추측할 뿐 딱히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처럼 윤리적으로 의혹 수준에 머물 뿐 감춰져 있던 추악한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가 이른바 '장충기 문자' 사건이다. 얼마 전 독립언론인 뉴스타파는 사회 각계 지도층 인사들이 전 삼성미래전략실 장충기 사장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폭로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물론 이 명단에는 주요 언론사 간부들도 들어 있다.

이들이 보낸 문자 내용은 다양하다. 정치적 논란거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축하한다거

나, 삼성 사주에 관한 추문성 기사를 비난하며 사주를 감싸는 아부성 발언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광고 유치를 노리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는 의도가 역력하게 드러나는 문자도 있었다. 노골적으로 자녀 취업을 부탁하는 구걸형 문자도 빠지지 않는다. 나아가 언론사 내부의 향후 보도방향이나 관련 인사 동정을 깨알같이 전해주는 충성형 보고도 있었다. 심지어 삼성 관계자와 관련 보도 담당자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보도내용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암시하는 내용까지 있었다. 아마 이들은 자신의 치부가 이처럼 적나라하게 공개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장충기 문자 사건은 끊임없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의 친재벌 편향, 특정 정파 영합적 보도 관행이 왜 그렇게 꾸준히 계속되었으며, 언론인에서 권력층으로 이어지는 인적 이동의 순환고리가 어떻게 지속되었는지를 일깨워주는 단서를 준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일부 인물들의 차후 이력을 보면 기업과 일부 언론인 간의 유착관계는 결국 상호 호혜적 이해관계에 기반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이해관계의 상충(conflicts of interest)'이라는 저널리즘 윤리 위반 사례들을 잘 보여준다. 이해관계의 상충이란 언론인의 직업 규범에 대한 헌신이 다른 이해관계나 가치와 충돌하면서, 언론의 도덕적 신뢰성이 손상을 입게 되는 상황을 지칭한다. 이해관계의 상충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취재 활동에 물질적 이해관계가 개입하는 형태를 띤다. 가장 흔한 사례는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물질적 도움이나 혜택을 받을 때 발생한다. 오랫동안 언론계의 악습으로 비난받은 '촌지'를 비롯해, 공짜 여행, 접대, 선물이나 무료 티켓 수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취재원이 기자들에게 이러한 특혜를 제공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으려는 이유는 유사 시 좀 더 우호적으로 보도해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갖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보다 좀더 간접적이면서 교묘한 유형은 출장 취재 지원이다. 특정 지역 관광청이나 항공사에서 후원하는 여행지 취재가 대표적인 예다. 영화업계 행사 취재나 스포츠 종목 취재경비 지원도 이 유형에 속한다. 정치 취재와 관련해 미국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된 사례는 기자들이 후보자의 선거 캠페인 과정에 동행 취재하는 관행이었다. 후보자와 밀착 동행하면서 취재하다보니 민심과 동떨어지고 후보자에 편향된 기사가 양산된다는 비판을 받아, 이제는 거의 사라진 관행이다. 물론 미국의 이라크 걸프전 취재처럼 군의 협조없이 취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용인된다.

이해관계 상충은 기자 개인 차원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언론사가 자사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인물이나 사건을 취재할 때 부닥치는 문제다. 언론사의 주요 광고주 기업을 취재할 때나 주식 소유처럼 이해관계가 얽힌 회사를 취재할 때에는 이러한 상충 관계에 처하게 된다. 장충기 문자 사건에서도 일부 언론사 간부들이 광고 유치를 염두에 두고 장 사장을 접촉했음을 짐작케 해주는 정황이 드러났다.

취재 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할 때에도 이해관계의 상충은 발생한

다. 경제 부처 출입기자가 내부자 정보로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자기 집안이 관련된 업종을 취재할 때가 바로 전형적인 사례다. 실제로 경제부 기자들이 이러한 유형의 윤리적 논란에 휘말리는 사례는 종종 있었다.

하지만 은밀하게 진행되어 일반인의 눈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더 심각한 병폐도 있다. 바로 대재벌이나 정치인 등 주요 취재원의 입장이나 이해관계를 옹호하기 위해 편향된 보도를 쏟아내는 행태다. 이는 언론인이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행하는 일종의 보험 들기 행태로 의심할 여지가 있다. 이것 역시 보도에 이해관계가 개입하는 사례로 지목할 만하다.

이해관계 상충의 두 번째 유형은 사적 관계가 개입할 때 발생한다. 2000년 미국 대선 최대 격전지이던 플로리다에서 방송사 선거보도 책임자인 존 엘리스(John Ellis)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조지 W. 부시, 플로리다 주지 켈 부시와 방송 인터뷰를 내보냈다. 문제는 엘리스가 부시 형제와 사촌 관계였다는 점이었다. 엘리스는 선거보도에서 이해당사자인 부시 형제와 밀접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보도에 깊숙이 관여해 채널의 신뢰성에도 타격을 입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은 취재 기자가 보도 대상과 사적 관계에 있을 경우 해당 취재에서 배제한다.

언론인이 취재 대상이나 사안과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데도 이를 밝히지 않을 때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예컨대, 부산의 한 유력 일간지는 지역에 근거를 둔 저비용 항공사의 특가 행사 등의 홍보성 기사를 종종 내보내고 있다. 신문에서 기업 홍보성 기사가 워낙 흔할 뿐 아니라 독자 입장에서는 유익한 프로모션 정보를 얻으니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문제는 이 신문사가 해당 항공사의 주식을 상당 부분 보유한 주주라는 것이다. 이해관계가 얽힌 기업에 관한 보도에서 상충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관계를 기사에서 밝히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해관계 상충의 세번째 유형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개입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치관 간의 상충을 초래할 때 발생한다. 기자가 개인적 가치관이나 소신과 관련된 사안을 취재할 때라든지, 정치 활동이나 사회운동에 관여할 때가 이에 해당한다. 1989년 <뉴욕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의 몇몇 여기자들은 여성의 낙태 권리를 옹호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참여 여기자들 역시 시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다고 믿었지만, 회사의 판단은 달랐다. 특히 <뉴욕 타임즈>의 린다 그린하우스(Linda Greenhouse) 기자는 낙태 문제에 관한 취재를 거의 20년 동안 맡아 왔을 뿐 아니라 대법원의 낙태권 관련 재판 취재도 담당했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기자의 정치적 가치관이 취재의 공정성이라는 가치와 충돌할 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타임즈>는 이를 이해관계의 상충 사례로 판단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서구의 언론사 중에서는 기자의 개인적 사회 활동을 금지하는 데도 있다. 하지만 기자 개개인의 사회 참여는 일괄적으로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이해관계 상충 관련 사례는 모두 언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모든 유형이 저널리즘 윤리 측면에서 중요하긴 하지만 한국 언론에게 요구되는 시급성에서는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한국 언론인들이 이해관계의 상충에 관여해 언론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사례는 무수하게 많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첫 번째 유형인 직접적 이해관계의 추구라고 할 수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표면적으로 거의 사라졌지만, 촌지 수수나 접대, 선물 등은 오랫동안 언론계의 병폐로 지탄받았다. 물론 어떤 기자이든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이 관행이 비윤리적이라는 데는 동

의하지만, 언론사나 취재부서, 직급 등에 따라 이 비판을 대하는 태도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언론인들이 이 문제를 그다지 절박한 이슈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현직 기자들과 외부인들의 평가는 더욱 큰 편차를 보인다.

물론 관행으로 통하면서 자행되는 ‘비윤리적’ 행태에 대해 현직 기자들이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많은 언론인들은 외부에서 받는 혜택이 실제 보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드러낸다. 물론 그간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주장은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나아가 더 근본적으로 보면 핵심 이슈는 이해관계 상충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제 보도 내용에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해관계의 상충은 효과가 실제로 발생할 때만 해당하지 않는다.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없더라도 외부인의 눈에 그렇게 비친다면 상충에 해당한다.

이해관계의 상충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영향력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 시민들이 해당 보도의 진정성에 의심을 품게 된다는 사실이다. 만일 기사를 작성한 기자나 언론사가 특정 대기업과 이해관계 상충에 해당하는 상황에 있다면, 기사 기획의 동기나 내용의 신뢰성에 대해 독자나 시청자가 의혹을 품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언론이 정보를 독점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시민들도 어떤 사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시각을 비교 검토해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기사의 편향성이 확인되는 순간, 그 언론사는 이후 모든 보도에서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늑대소년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

요즘에는 과거와 달리 언론사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상품가치가 그다지 높지 않다. 언론사 기사의 가치는 정보 자체가 아니라 정보 제공자의 신뢰도, 권위, 말하자면 이름값에 있다. 직업 윤리를 지키지 않는 언론, 신뢰도가 낮은 언론사가 제공한 뉴스는 그냥 정보 공해이자 ‘카더라’ 수준의 ‘가짜 뉴스’나 다름없다. 그렇지만 직업윤리 문제를 대하는 기자들의 태도는 여전히 이중적이다. 윤리 수준의 제고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여러 시급한 현실적 여건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리는 한가한 이상론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직업윤리 확립이야말로 머나먼 이상이 아니라 언론인 직업의 생사를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숙제가 된 것이다.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제도 운용의 경제적 가치 평가

조준원 언론중재위원회 전문위원  
김진하 언론중재위원회 조사관

## 1. 서론

어느 사회나 다양한 갈등이 존재한다. 세대·이념·빈부·계층·지역·노사·남녀·인종 갈등 등 정도와 빈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인류는 태생적으로 갈등을 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 특히 우리 사회는 여러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에서 집단 간 이해 충돌로 사업이 지체되거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오히려 갈등이 자연스런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이 OECD 27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심각하며, 사회갈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무려 최대 246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sup>1)</sup>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1인당 국민총생산이 7~21%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러 사회갈등 중 언론 관련 분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50조 원<sup>2)</sup>, 가짜뉴스 때문에 한 해 30조의 경제적 손실을 발생한다<sup>3)</sup>는 조사도 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방법,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 판

1) 임선태 (2013. 8. 21). 삼성경제제 “韓 사회갈등에 따른 경제손실 年 246조”. <아시아경제>. URL: <https://goo.gl/MFQqcN>

단을 구하는 방법, 언론중재위원회 같은 특정 영역의 조정기구에서 화해와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 등이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이라 한다)에 해당한다.

ADR은 법원에서 행해지는 소송의 형태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제도를 의미하며,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판결형태가 아닌 방식, 이른바 화해, 조정, 중재 등과 같이 제3자의 관여 혹은 당사자 간 교섭과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제도를 말한다.<sup>4)</sup> 최근 AD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를 광범위하게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사회갈등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대안으로 ADR의 활성화가 제안되기도 한다.

하지만 ADR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높아진 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ADR제도는 그다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ADR제도의 현실적 이용이 저조하다고 평가 받는 가운데서도 언론 관련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언론중재위원회는 한 해 처리하는 사건 수나 피해구제를 측면에서 상당히 활발한 제도 운용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은 언론보도가 빠르게 확산되는 성격 탓에 신속한 피해구제가 요구된다. 이러한 언론보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는 언론중재위원회라는 독특한 ADR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을 구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간과 비용, 노력 등을 절감하자는 취지이다.

이러한 제도도입의 취지에 부합하게 언론분쟁의 소송 대체적 해결 제도로서 언론조정제도 운용의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관련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제도 운용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 평가 측정을 시도할 것이다. 이를 통해 ADR제도로써 언론조정제도가 언론분쟁 당사자에게 어느 정도 효율적이며 사회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제도로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 II. 선행연구 검토

ADR의 사전적 의미는 갈등해결에 있어 법원심리나 소송 외의 대안이 되는 갈등해결방식을 의미한다. 법원에서의 소송 건수가 증가하면서, ADR은 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 비밀유지 및 갈등해결 시 자기결정권 보장 등의 이유로 갈등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원 내에서도 각광받고 있다.<sup>5)</sup>

2) 권순택 (2014. 2. 24.). "48% 얘기는 언론보도에 등장하지않아". <미디어스>. URL: <https://goo.gl/DFsb5Y>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공동 주최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이기주 LB컨설팅코리아 대표는 "사회갈등 비용이 300조 원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50조 원은 언론 탓"이라고 비판했다.

3) 현대경제연구원 (2017). 가짜 뉴스(Fake News)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URL: <https://goo.gl/FkpT6R>

4) 반홍식 (1998). <소송외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 한국행정연구원 (2012). 대안적 갈등해결방식(ADR) 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URL: [https://www.kipa.re.kr/site/kipa/research/selectBaseView.do?gubun=BA&seqNo=ABCD\\_000000000000917](https://www.kipa.re.kr/site/kipa/research/selectBaseView.do?gubun=BA&seqNo=ABCD_000000000000917)



특히 재판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법원은 과중한 업무 부담을 안아왔고, 이로 인한 사법운용상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해왔다. 그 일환으로 민사조정제에 관한 통일법전인 민사조정법 제정이나 화해권고결정제도가 신설된 바 있다. ADR을 권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이에 힘입어 ADR이라는 교과목이 사법원수원 커리큘럼에 포함되는 등 어떤 측면에서는 ADR을 권장하는 사회운동이 전개되는 느낌이라는 평도 있을 정도이다.<sup>6)</sup>

미국의 경우도 분쟁 대부분은 정식재판에 가지 않는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민사분쟁 중에서 실제로 정식재판으로 가는 사건은 5% 정도뿐인 것으로 알려졌다.<sup>7)</sup>

ADR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갈등 해결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감소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에서 ADR이 급속히 확산된 가장 큰 이유는 효율성, 효과성, 신속성 때문이었다. 이는 복잡한 재판 과정에서 소모됐던 인건비 등의 비용적 측면, 시간 절감을 통한 기회비용 측면에서의 이익을 모두 포함한다.<sup>8)</sup>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ADR기구라 할 수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제도 운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과연 어느 정도인가? 언론분쟁을 조정하는 제도가 도입된 지 40년 가까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언론중재위원회의 제도 운용의 가치를 화폐로 환산하는 시도는 전혀 이뤄진 바 없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같은 유사한 ADR기구에 관한 경제적 효과 분석을 시도한 몇몇 연구가 있을 뿐이다.

조승국·김정인(2015)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환경분쟁제도의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CVM 방식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조사하였다.<sup>9)</sup> 조사 결과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연간 총 25억 8천만 원

6) 조홍식 (2006).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경제학-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1호, 14.

7) Robert D. Cooler & Thomas Ulen (2009). Law & economics. 한순구 (역) (2009) <법경제학>, 경문사, 525.

8) 앞의 한국행정연구원 (2012).

9) 조승국·김정인 (2015).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 <환경정책>, 제23권 제1호, 183-201.

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CVM방식은 비시장재에 대한 가치 측정방법론으로, 제시된 금액에 대해 지불 의사(WTP: Willing To Pay)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모형화한다. 즉 '예', '아니오'의 이산응답을 모형화한 후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통해 관련된 모수를 추정하고 다음 단계로 분포의 성격과 평균값 또는 중앙값의 정의를 이용하여 WTP의 평균값 또는 중앙값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이 연구에서는 소득이 있는 가구주 또는 배우자를 조사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은 환경피해에 대한 일반 현황 질문,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설문, 사회경제적 질문 세 가지로 질문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임동진(2012)은 비용/편익분석방법을 이용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이 갖는 경제적 편익효과를 분석했다.<sup>10)</sup> 비용/편익 분석은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정책 및 기구에 투입된 비용과 비용 투입 이후의 결과를 화폐단위로 환산해 비용/편익을 비교한 후 그 경제적 가치를 측정한다.<sup>11)</sup> 2011년 기준 연간 총비용은 61억 원, 연간 총편익은 166억 원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구 운영에 따른 분쟁조정 순편익(총편익-총비용)은 연간 약 105억 원 이상 발생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분쟁조정기구가 제대로 분쟁조정기능을 발휘한다면 각종 분쟁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적 해결방법임을 경제적 수치로 보여주었다고 주장하였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겨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분석한 바 있다.<sup>12)</sup> 이 연구에서는 ADR기구의 주요 기능 및 활동 내역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편익 항목을 구성한 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량적 측정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직접적 구제편익 46억 2천300만 원, 기타편익 3억 9천900만 원, 소송비용절감 편익 20억 5천900만 원, 시간절감 편익 8억 원 등 총편익 78억 8천600만 원을 추정하였다.

이밖에 공정거래조정원은 매년 해당 기관에서 조정처리한 사건의 피해구제성과를 피해구제액과 절약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 등)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발표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피해구제액 853억 원, 절약된 소송비용 94억 원 등 947억 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sup>13)</sup> 이러한 결과는 비용은 배제된 단순 편익만 측정한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와 관련한 연구로는 김두호(2015)가 2005년도 언론중재법 제정과 2009년도 언론중재법 개정이 가져온 제도 개선의 효과성을 언론조정·중재신청사건 수, 피해구제비율, 이용만족도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 바 있으나 경제적 효과 측면은 다루지 않은 한계가 있다.<sup>14)</sup>

10) 앞의 한국행정연구원 (2012).

11) 앞의 한국행정연구원 (2012).

12)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2015).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사회·경제적 편익분석. URL: <https://goo.gl/m1MEc8>

13) 공정거래조정원 (2018. 1. 23.). (보도자료) 공정거래조정원 2017년 분쟁조정 3,035건 처리, 피해구제성과 947억원. URL: <https://goo.gl/8t1fn>

14) 김두호 (2015). <제도 개선의 효과성 연구-언론중재제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III. 분석 방법

#### 1. 편익/비용 분석

ADR 관련 연구에 따르면 ADR의 장점으로 비용절감과 시간절약, 분쟁조정과정 및 결과에서의 당사자 만족도 등을 들고 있다. ADR 절차는 행정비용의 측면에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식 재판의 결과와 유사한 합의를 맺을 수 있다면 법적 분쟁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sup>15)</sup>



ADR기구 운용의 경제적 편익 효과 분석을 시도한 선행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 경제적 편익 효과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편익/비용분석(B/C Analysis)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분석방법은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여러 방법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운영의 경제적 가치를 현실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앞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분석한 연구는<sup>16)</sup>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회·경제적 편익분석을 위해 위원회의 주요기능과 활동을 상담콜센터 운영, 피해예방 홍보 및 캠페인 등 분쟁의 '사전 예방활동'과 분쟁 발생 후 위원회를 통한 조정안 도출 등 '사후 조정활동'으로 구분하고 측정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사후 조정활동만 정량적인 편익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상담콜센터운영이나 피해예방 홍보 등의 활동으로 편익은 발생하지만 편익의 정량적 측정에 부적합하다고 본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도 다양한 영역이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 및 중재 업무뿐만 아니라 언론보도의 개인적·사회적 법익 침해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함으로써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는 언론보도 심의기능,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언론 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제도 연구,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이러한 기능과 역할이 편익을 발생시킬 수 있으나 선행연구와 같이 정량적 측정 여부를 고려할 때 사후 조정에 국한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사전 예방 차원인 시정권고 기능은 언론보도의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에 대해 유사한 보도 시 주의를 권고하는 것이므로 당해 시정권고가 차후에 어느 정도 권고적 기능을 가져왔는지 측정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

<sup>15)</sup> 앞의 한승구 (역) (2009), 494.

<sup>16)</sup> 앞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2015).

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역시 교육의 진행 여부에 따른 편익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분석대상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기능 수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한정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 기간은 2016년으로 했으며,<sup>17)</sup> 언론중재위원회가 2016년 처리한 3,170건의 조정청구사건 가운데 처리결과와 관계없이 언론중재위원회 절차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 피해구제 건수<sup>18)</sup>를 분석대상으로 했다.

〈표 1〉 2016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사건 처리 현황

| 조정성립 | 처리결과   |            |            |     |    |                  | 청구건수  | 피해구제건수 |
|------|--------|------------|------------|-----|----|------------------|-------|--------|
|      | 직권조정결정 |            | 조정불성립 결정   | 기각  | 각하 | 취하               |       |        |
|      | 동의     | 이의         |            |     |    |                  |       |        |
| 961  | 182    | 118<br>(4) | 416<br>(5) | 108 | 19 | 1,366<br>(1,049) | 3,170 | 2,201  |

## 2. 분석항목의 구성

### 1) 편익 항목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한 언론피해구제 편익을 먼저 그 성질에 따라 ‘적극적 이익(후생의 직접 증가)’과 ‘소극적 이익(후생의 감소 회피)’으로 나누어 접근하고자 한다. 적극적 이익은 위원회의 구제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직접적으로 얻는 만족이나 소득을 일컫는다고 볼 때 그 경제적 가치 측정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신청인의 후생을 직접 증가시키는 이익이므로 독립적으로 계상 가능하다. 반면 소극적 이익은 ‘A가 아니었다라면 지출하였을’ 기회비용의 회피이익이므로 A가 없었더라면 선택했을 이른바 ‘대안 B’에 대한 판단이 논리필연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대안 B를 ‘법원을 통한 피해구제’로 설정했다.

또한 소극적 이익 판단을 위해 대안 B를 추계에 편입시키는 이상, 적극적 이익 판단에서도 위원회 이용에 따른 이익과 대안 B에서 예상되는 적극적 이익 간 차액을 추산하여 그 순액만을 위원회의 구제편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가. 위원회를 통한 피해구제 중 적극적 이익(이하 ‘구제편익’) : 정정/반론/추후보도 등의 환산가

<sup>17)</sup> 분석기간을 가장 가까운 2017년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언론소송관련 법원 판결 현황자료로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해마다 발간하는 자료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탓에 부득이 2016년을 분석 대상기간으로 하였다.

<sup>18)</sup> 피해구제건수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 중 동의+그 외 보도 등 피해구제 된 건수를 말한다.

액, 손해배상 실행액 중 법원을 통한 피해구제액 공제 후 순액

나. 위원회를 통한 피해구제 중 소극적 이익(이하 '절감편익') : 변호사 선임비용(성공보수금 별도 계상 필요), 송무비용(송달료, 인지대, 검증·감정비용), 소요기간 절감비용

## 2) 비용 항목

위원회는 현재까지 별도의 수수료, 인지대 등을 사건당사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전액 무료로 사건을 처리해오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를 통한 피해구제절차상 비용이라 함은 오로지 위원회의 자체 운영예산에 국한해 추계해볼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예산 중 언론피해구제 기능에 투입되는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와 인건비성 사업비(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등으로 구성된다. 그 외 기타 경상비에 대해서도 인건비적 성질을 반영한다는 전제하에 기본적으로 투입인원에 비례하는 금액을 관련 경상비로서 추계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의 피해구제 실무는 전국 18개 중재부별로 배정된 사무처 직원을 2명으로 보고 약 36명의 인건비<sup>19)</sup>를 적용하기로 한다.

### ① 인건비

사건 처리에 투입되는 각 중재부별 조사관 및 지역중재부 소장, 관련 업무 담당자의 인건비 연간 합산총액을 피해구제에 직결되는 비용으로 추계한다는 전제하에, 해당 직무를 주로 담당하게 되는 직급의 평균임금에 투입 인원 36명을 반영해 추계한다.

### ② 사업비

위원회의 사건 처리는 전국 18개 중재부에 소속된 중재위원 90명의 조정심리를 통해 이뤄지며 그 심리에 지급되는 심리수당 및 각종 회의수당 등이 실비변상적 성격으로서 위원회 예산에 편성돼있는 만큼, 이를 사건처리를 위한 직접비로서 비용 항목에 계상한다.

### ③ 경상비

상기 인건비와 사업비가 위원회의 사건처리에 투입되는 직접비라면, 간접비로서 위원회가 사용하는 사무공간이나 수도·광열, 각종 소모품 등에 관한 비용 또한 산입돼야할 것이다.

위원회가 수행하는 역할이 비단 언론피해구제 사건처리에만 국한되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상비 중 조정 및 중재업무와 높은 관련성을 지닌 해당액을 산출해 편익-비용 분석에 산입하는 것

<sup>19)</sup> 각 중재부 담당 조사관은 1명이나 상담 등의 조정지원 인력 등을 감안 중재부별 2명으로 산정하였다.

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경상비는 그 성질상 조직 전체 차원에서 공유하는 비용이 대부분이고 특정 기능과 해당 비용을 1:1로 대응시키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연간 경상비를 적정 비율로써 사건처리에 투입되는 부분으로 조정해 반영하고자 하며, 이때 적용할 비율은 앞서 제시한 투입인원 대비 비율을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하였다.

$$\frac{\text{중재위원} + \text{중재부별 사무처 직원}}{\text{중재위원} + \text{사무처 총원}} = \frac{90 + 36}{170} \approx 0.74 \text{ (16말 중재위원 및 사무처 정원 기준)}$$

#### IV. 언론중재위원회의 경제적 편익 분석 결과

앞서 분류한 각 항목들을 편익-비용 분석틀에 대입하면 아래 <표 2>와 같은 구조로 정리해볼 수 있다.

<표 2> 편익-비용 분석항목 구조

| 항목         |           | 측정지표          | 측정방법   |   |
|------------|-----------|---------------|--|---|
| 편익         | 구제 편익     | 피해구제보도        | 지면, 인터넷, 방송에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게재 또는 방송했을 때 발생하는 편익 |   |
|            |           | 손해배상          | 법원 평균 손해배상액-조정액                              |   |
|            | 절감 편익     | 변호사 수입비       |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                               | 비재산적 소송목적 값의 수입비용×사건수                                 |
|            |           | 인지대, 송달료 등    | 소송절차를 이용하기 위한 수수료 및 소송의 행정처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인지대 : 소송가액 대비 수수료×사건수<br>송달료 : 우편료×소송당 송달횟수×소송당사자×사건수 |
|            | 소요기간 절감비용 | 법원소송에 소요되는 기간 | 소송평균소요기간×1일 최저임금×사건수                         |   |
| 비용         | 운영 예산     | 인건비           | 조정업무처리 담당 직원 인건비                             | 조사관 및 조정업무 관련 직원 인건비                                  |
|            |           | 사업비           | 중재위원 수당 등                                    | 중재위원 심리수당 책정 예산                                       |
|            |           | 경상비           | 사무공간, 수도, 광열, 각종 소모품비                        | 전체 경상비×0.74   |
|            | 소요기간      | 조정에 소요되는 기간   | 조정평균소요기간(2주)×1일 최저임금×사건수                     |   |
| 추계액 계(NET) |           |               |  |   |

##### 1. [구제편익] 보도 구제

정정/반론/추후보도를 통한 피해구제의 편익 추계는 앞서 언급한 대로 비화폐성 대상에 대한 가치 측정을 전제로 한다. 피해구제보도의 경제적 가치 평가를 위해, 위원회를 통한 구제는 정정 등의 피해구제보도가 주를 이루지만 보도 구제의 B/C분석상 편익 환가금액을 '0'으로 설정했다.

정정이나 반론보도 등 피해구제보도로 구제를 받은 경우 해당 매체의 광고단가로 직접적인 화폐 가치를 종합하여 구제 편익을 추정하는 방식을 검토한 바 있다. 신문의 경우는 정정이나 반론보도

문의 크기, 지면 위치 등을, 방송의 경우는 정정보도문의 방송시간과 프로그램 방영시각 등을 고려하여 측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위원회가 매년 발간하고 있는 언론조정 사례집에 모든 사건의 보도문을 게재하고 있지 않고 주요 사건만 선별적으로 수록하고 있어 피해구제보도문의 분량과 크기, 게재면이나 방송시간 등을 확인하기 곤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법원을 통한 피해구제'와의 순액 추계의 필요성에 따라, 비교변수 상호 간에 비화폐물 對 비화폐물의 관계를 갖는 상황에서 순액의 측정이 지니는 의미는 미미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정정·반론 등 피해구제를 위한 보도가 게재된 이상 그 보도의 경제적 가치는 법원과 위원회 중 어느 곳을 거쳤든 동일하게 평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분석을 위한 전제로서 동일한 사건 수(법원 기준)를 상정하여 그 편익과 비용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이상 동가(同價), 동수(同數) 간 순액 측정은 무의미하다고 할 것이다.

## 2. [구제편익] 손해배상

2016년도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한 법익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민사소송 판결은 총 210건이며, 개별 청구권에 따라 재분류한 결과 한 해 총 561건의 언론소송 판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sup>20)</sup>

### 1) 법원 손해배상액 PV(Present Value) 계산<sup>21)</sup>

법원에서 인용된 손해배상액과 위원회의 손해배상 조정액과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조정절차와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의 손해배상액 판결액에 할인율을 적용하였다. 할인율은 전국 16개 은행의 기업 신용대출 평균 금리(16. 12. 기준)<sup>22)</sup>인 연 5.1%를 현재가치 할인율로 설정했다. 할인기간은 2016년도 선고된 판결의 실제 사건분포에 따라 1심 판결 평균 소요기간인 약 1.33년으로 했다.<sup>23)</sup>

할인대상액은 2016년도 법원 손해배상청구사건 중 인용된 105건(손배 33억 인용 사건 제외)의 평균 손해배상 인용금액인 7,367,000원으로 설정했다. 그리하여 산출한 법원 손해배상액의 현가는 아래와 같다.

$$* \text{법원 평균 손해배상액의 현가(PV)} = \frac{7,367,000}{1,051^{1.33}} \approx 6,897,940(\text{원})$$

20) 언론중재위원회 (2017), 2016년도 언론관련판결분석 보고서, URL: <https://goo.gl/WQZ9mt>

21) 법원 소재기를 통해 받을 수 있었던 손해배상 인용액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였다.

22) 전국은행연합회 (2016), 중소기업대출금리, URL: <https://goo.gl/JRCpso>

23) 앞의 언론중재위원회 (2017).

2) 위원회 손해배상액

2016년도 위원회에서 처리한 총 3,170건의 사건 중 손해배상청구건수는 1,069건이며 이 중 실제로 배상액이 지급된 70건의 평균 손해배상액은 약 223만 원이다.

3) 손해배상 항목의 편익 추계

손해배상 청구건수 대비 [조정성립건수]의 비율을 승소율[성립률]이라고 할 때, 법원 승소율은 38.8%이고 위원회 조정성립률은 6.5%로 나타난다. 여기서 대상기간 동안의 법원 총 청구건수 561건 중 손해배상청구건수인 273건에 대해 위 각 승소율[성립률]을 적용해 법원과 위원회 각각의 손해배상 이행건수를 추산해보면 법원 105건(실제값), 위원회 약 18건으로 설정해볼 수 있다. 즉, 105건과 18건을 각 평균인용액을 반영하여 손해배상을 통한 연간 총 구제액을 추산했다.

3. [절감편익] 변호사 선임비

비재산적 소구에 대한 소송목적의 값을 5천만 원으로 볼 때,<sup>24)</sup> 통상 변호사 선임비용을 추산해보면 아래와 같다. 변호사 선임비용 추산에 적용한 기준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779호, 2018. 3. 7.)<sup>25)</sup>을 참고했다.

\* 소송목적의 값 : 5천만 원

$$\text{선임비용} = 200\text{만 원} + (\text{소송목적의 값} - 2,000\text{만 원}) \times \frac{8}{100} = 440\text{만 원}$$

24)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25)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 소송목적의 값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
|--|---------------|
| 2,000만 원까지 부분  | 10%           |
| 2,000만 원을 초과하여 5,000만 원까지 부분 $[200\text{만 원} + (\text{소송목적의 값} - 2,000\text{만 원}) \times \frac{8}{100}]$ | 8%            |
| 5,000만 원을 초과하여 1억 원까지 부분 $[440\text{만 원} + (\text{소송목적의 값} - 5,000\text{만 원}) \times \frac{6}{100}]$     | 6%            |
| 1억 원을 초과하여 1억 5천만 원까지 부분 $[740\text{만 원} + (\text{소송목적의 값} - 1\text{억 원}) \times \frac{4}{100}]$         | 4%            |
|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여 2억 원까지 부분 $[940\text{만 원} + (\text{소송목적의 값} - 1\text{억 5천만 원}) \times \frac{2}{100}]$     | 2%            |
| 2억 원을 초과하여 5억 원까지 부분 $[1,040\text{만 원} + (\text{소송목적의 값} - 2\text{억 원}) \times \frac{1}{100}]$           | 1%            |
|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text{만 원} + (\text{소송목적의 값} - 5\text{억 원}) \times \frac{0.5}{100}]$                | 0.5%          |

상기 선임비용(건당)을 기준으로 소 제기로 지출이 예상되는 기회비용의 절감액을 추산했으며, 성공보수금은 제외하였다. 여기서 적용할 사건의 수는 '절감편익'으로서 회피한 기회비용, 즉 위원회에 제기된 사건 중 위원회 절차가 없었더라면 법원을 통해 처리되었을 경우의 비용을 추산한다는 그 항목 본질에 맞추어, 위원회의 2016년도 신청사건 중 위원회 절차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 피해구제건수(2,201건)를 기준으로 삼았다.

#### 4. [절감편익]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목적의 값 1천만 원 이상을 상정해 인지대는 [소가의 0.45%+5,000원]으로 계산한다. 소가는 각 건당 5천만 원으로 하여 2016년도 위원회 피해구제건수를 곱해 최종 인지대 비용을 추산했다.

한편 송달료의 경우, 2016년 4월 기준 1회당 우편료 3,700원을 기준으로 원고, 피고 각 1명으로 상정해 사건 1건당 74,000원(3,700×2명×10회분)으로 추계했다.

#### 5. [절감편익] 소요기간 절감비용

법원의 각 심급별 평균 소요기간은 아래 표<sup>26)</sup>와 같다. 이 가운데 편익/비용 분석에 적용하는 법원 소요기간은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인 약 1.33년을 적용하였다.<sup>27)</sup>

〈표 3〉 2016년도 선고된 언론 관련 판결 소송기간 심급별 분포

| 구분 | 1년 이내 | 2년 이내 | 2년 초과(3년 가정) | 계   |
|----|-------|-------|--------------|-----|
| 1심 | 91    | 27    | 7            | 125 |
| 2심 | 52    | 7     | 1            | 60  |
| 3심 | 20    | —     | 5            | 25  |
| 합계 | 163   | 34    | 13           | 210 |

한편, 분석대상 기간인 2016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6,030원으로 근로자 1인의 최저 연 급여는 15,050,880원(1일 8시간, 연 52주 기준)으로 나타난다. 이를 기준으로 법원을 통한 피해구제의 소요기간 및 단위기간 당 일실소득 기준금액을 마련하여 경제적 관점에서의 기간별 시간가치를 추계하였다.

26) 앞의 언론중재위원회 (2017). 이 자료는 동일한 사건의 소요기간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2016년 한 해 동안 법원이 선고한 판결을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다.

27) 1심 평균 소요기간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여기서 모든 사건의 개별적 소요기간을 전부 실제값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분포표 분류상 각 1년 이내, 2년 이내, 2년 초과로 구분한 소요기간을 각 1년, 2년, 3년의 고정값으로 일괄 적용하여 대략적인 소요기간을 산출했다.

$$1\text{심: } \frac{91 \times 1 + 27 \times 2 + 7 \times 3}{125} = 1.328(\text{년})$$

## 6. 편익-비용 분석 추계 결과

지금까지 살펴본 항목별 추계 방법을 통한 편익-비용 분석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4〉 편익-비용 분석 추계결과

(단위 : 천 원)

| 항목         |            | 추계액        | 비고         |          |
|------------|------------|------------|------------|----------|
| ① 편익       | 구제편익       | 보도 구제      | 0          |          |
|            |            | 손해배상       | △684,144   |          |
|            | 절감편익       | 변호사 선임비    | 9,684,400  | 성공보수금 제외 |
|            |            | 인지대, 송달료 등 | 669,104    |          |
|            |            | 소요기간       | 44,058,893 |          |
| 소계         | 53,728,253 |            |            |          |
| ② 비용       | 운영예산       | 인건비        | 2,160,000  |          |
|            |            | 사업비        | 486,000    |          |
|            |            | 경상비        | 1,667,700  |          |
|            | 처리비용       | 소요기간       | 1,325,079  |          |
|            | 소계         | 5,638,779  |            |          |
| 추계액 계(①-②) |            | 48,089,474 |            |          |

정리해보면, 위원회 분쟁조정제도 운용으로 획득 가능한 편익의 경제적 가치는 약 537억 원으로 추계됐고, 사건처리를 위해 위원회에 투입된 운영예산으로서의 비용은 약 56억 원으로 추계됐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편익-비용의 연간 순액(Net)은 위와 같이 약 48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었다.



편익/비용분석은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활용되며 일반적으로 B/C RATIO가 '1'이상일 경우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된다. 조사결과 위원회의 B/C RATIO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ADR기구의 성격에 부합하게 법원의 소송절차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한 사건 처리에 따른 비용 절감과 수수료 등의 비용이 들지 않는 점 등이 높은 수준의 B/C RATIO를 나타낸 요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조정업무 외에 다른 법정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의 2016년 총 예산 107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위원회 운용에 따른 순익은 예산 대비 4.5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경제적 가치가 중시되는 자본주의 사회이지만 모든 이익과 비용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녹록치 않다. 인격권을 침해당한 경우 그 피해는 경제적 가치로 가늠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에 더욱 그러하다.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산산이 찢겨진 명예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는 것은 어찌 면 의미 없는 일이며, 경제적 보상으로 치유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 또한 무리한 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운용의 경제적 가치 평가를 시도한 것은 제도의 효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며, 제도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당위적인 논의에만 그쳤을 뿐 실증 적인 연구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1981년 창립되어 첫 해 언론조정신청사건을 불과 44건 처리했지만 지난 2017년에는 무려 73배나 증가한 3,230건을 처리하였고, 이 가운데 73.7%의 사건을 구제하였다.<sup>28)</sup> 위원회를 이용하는 조정신청인이 늘어나고, 높은 피해구제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신청인의 기대 이익-피신청인의 기대손실 < 신청인의 소송비용+피신청인의 소송비용” 모델을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6년을 기준으로 위원회 조정제도 운용의 편익/비용 분석결과, 2016년 한 해의 순편익은 480억원으로 그 해 위원회 연간 총 예산의 4.5배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비용 대비 편익 수준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위원회가 언론보도로 인한 갈등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모 아니면 도”식으로 또는 흔히 일도양단으로 칭해지는 소송절차에 따른 법원 판단을 구하는 것보다 위원회 절차는 언론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조정제도를 운용함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실증적으로 평가한 시도가 지금까지 없었기에 이 연구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제시된 분석 평가 모델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위원회뿐만 아니라 여타 분쟁조정기구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8) 언론중재위원회 (2018. 3. 5.), (보도자료) 인터넷 매체, 2017년도 조정사건 3230건 중 69.9% 차지 URL: <https://goo.gl/tG6PoI>

# 국가 기관의 반론권(Right to reply)과 언론 자유의 경계

핀란드 언론의 두 사례를 통해

최원석 핀란드 라플란드대학 미디어교육 석사 과정

## 1. 들어가며: 핀란드의 언론 자유 논란

국가적 사안을 다루는 뉴스에서 언론 자유와 반론권의 경계는 어디쯤일까? 실제 취재 현장에서 한 기자가 정부 관련 내부고발 자료를 입수했다고 가정하자. 기자는 취재를 시작하고 보도하는 순간까지 헌법에 보장된 언론 자유와 사회적 기회비용을 고민할 것이다. 특정 사안들은 언론 윤리에는 어긋나지 않더라도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든다. ‘자료는 좋은데, 써도 될까?’ 그 소재가 어떻든, 언론 보도로 인해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을 당사자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건 형평성 원칙 가운데 하나다.

언론은 ‘반론’이라는 윤리적 장치를 사용해 언론 자유를 누리다가도, 종종 현안에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탐사를 멈춘다. 언론사 경영진이 시장 논리에 따라 ‘뿔고추’를 건드리는 취재를 제한하는 일은 꽤 흔하다. 때로 기자의 취재는 기자 개인의 정치적 성향 또는 타협가능한 언론 자유 속에서 소극적이게 된다. 이 가운데 한국 언론이 가장 허술하게 검증하는 사안 중 하나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북한, 국방, 간첩과 같은 소재가 얽혀 있는 보도다. 일명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이버 공격이 있을 때, 대다수 언론은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편에 서서 기사를 낸다. 국가보안법이라는 구시대적 법률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 속

에, 북한을 어느 쪽으로든 이롭게 하는 보도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국가안보와 상충하는 지점에서, 우리 언론은 스스로 상대의 '반론권'을 지나치게 배려하곤 했다.

'세계언론자유지수' 최상위권 국가 핀란드에서 바로 이런 사례를 연달아 목격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을 다뤘을 때 정부의 대응은 공격적이었다.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사실상 추가 보도를 막았으며 사건 조사 또한 비공개로 진행됐다. 국가는 보도 내용을 해명하거나 반론하는 대신 수사를 택했고, 관련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당사자들에게 함구령을 내렸다. 2017년 말 국가 기밀문서를 입수해 이를 보도한 헬싱긴 사노맷(Helsingin Sanomat)의 사례를 이 글의 소재로 삼은 이유다.

이 사건은 핀란드 언론계에 '언론 자유'에 대한 여러 질문을 던졌다. 핀란드는 국정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에서 지난 몇 년 전까지도 줄곧 1위를 차지했다. 공영, 민영에 상관없이 언론이 정치 권력이나 자본 권력을 비판적으로 감시했고,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박받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왔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KBS와 같은 공영방송 '윌레(Yle)'는 특별세를 받아 운영되면서도, 취재 현안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정부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적어도 핀란드 언론에 성역은 없어 보였다. 2016년과 2017년 잇따라 발생한 두 사건이 아니었으면 이런 평가는 여전히 유효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핀란드 최대 종합일간지인 헬싱긴 사노맷의 '국가기밀문서 보도'에 초점을 맞춰, 언론 자유와 국가 반론권이 부딪힌 사례를 살펴본다. 이와 함께 '총리 일가 공적자금 특혜 의혹' 보도 이후 이어진 핀란드 총리의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을 덧붙여 소개한다. 대북 국가안보 관련 문제를 다룰 때 일면 편협한 모습을 보여온 한국 언론에 참고할 만한 예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테면 최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한국 사회 변화 속에서 '안보' 개념 또한 달라질 것이고, 이에 따른 (안보 문제를 다룰 때의) 언론 자유와 국가 반론권의 경계 또한 그 성격이 바뀔 것이란 기대가 이 소고(小考)의 바탕이다.

다만 본 글에서 쓰는 '반론권(Right to reply)'은 법적 개념보다는 다분히 실용적인 수준의 용어다. 언론보도 피해자를 규정하는 공인이론(Theory of Public Figures)이나 당사자 적격(當事者適格), 인격권(人格權)과 같은 관련 개념은 본 글에서 다루지 않았음을 미리 밝혀둔다.

## 2. 반론권 대신 수사 의뢰를 택한 국가: '헬싱긴 사노맷 케이스'

노트북을 망치로 내려쳐 자료를 없앨 정도로 중요한 비밀은 어떤 것일까? 지난 2016년 말 '국정 농단' 사건 당시 최순실 씨가 측근에게 연락해 '더블루케이'에서 쓰던 컴퓨터 다섯 대를 초기화하고 망치로 내려쳐 파손한 일이 있었다.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어내린 뒤에야 드러날 정도로 은밀한 정보였을테니, 얼마나 절박하게 증거 인멸이 이뤄졌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핀란드 최대 종합

일간지 기자가 정보원 보호를 위해 노트북을 망치로 때려 부순 일이 일어났다. 핀란드 언론을 시끄럽게 만든 언론 자유 논쟁의 극적인 시작점이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2017년 12월의 일이다.

헬싱긴 사노맛은 12월 16일 토요일판 1면에 ‘핀란드의 비밀 공간’이란 제목으로 정부 보안시설 관련 기사를 실는다.<sup>1)</sup> 이 기사는 핀란드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센터(Finnish Defence Intelligence Agency, VKoeL)의 임무가 담긴 기밀 문건을 바탕으로 쓴 것이었다. 그동안 여러 언론인이 소송까지 불사하고도 이 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데 실패할 만큼 베일에 가려진 시설이었다. 헬싱긴 사노맛은 어느 내부제보자로부터 10년 된 문건을 확보했고, 기밀 시설의 실체를 처음으로 알렸다. 기사에는 정보센터의 핵심 임무 중 하나가 바로 러시아군 관련 전자 정보 수집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핀란드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었다. 한국으로 치면 대북 정보수집 기밀 시설이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언론 보도 몇 시간 만에 핀란드 정부가 국가안보 위협을 거론하며 기자와 신문사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대통령은 공식 성명을 내고 “극비 문서 내용 공개는 우리 안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비판했고, 핀란드 방위사령부는 국가안보를 침해한 혐의로 국립수사국(NBI,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에 신문사를 수사 의뢰했다. 일부 독자는 러시아에 좋은 일 하지 말라고 이메일을 보내거나 항의성 전화를 걸었다. 편집국장은 “독자들에게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공개 편지를 신문에 실었다.

다음날인 일요일 오후, 취재 기자 둘 가운데 한 명인 라우라 할미넨(Laura Halminen)이 취재원 보호를 위해 지하실에서 노트북을 때려 부순다 일이 더 커졌다. 할미넨은 자신이 망치로 내려친 노트북에서 불이 나자 소방서에 신고했다. 그런데 소방관과 함께 집에 방문한 경찰이 기자 신원을 확인한 뒤 상부에 알렸다. 전날 보도 이후 수사당국은 이미 취재진을 수사 대상에 올려둔 상태였다. 할미넨 기자의 집에는 국립수사국 직원들이 파견됐고 네 시간 동안 휴대전화,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стик 등 관련 증거 19점을 압수했다. 사전에 영장을 발급받지 않은 긴급 압수·수색이었다.

언론계는 헬싱긴 사노맛에 대한 정부 대응이 이례적이고 부당하다며 비판했다. 해당 보도가 국가안보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압수·수색에 수사까지 진행할 정도의 중대한 기밀 유출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이었다. 헬싱긴 사노맛의 취재 배경에는 대규모 국내 정보수집을 합법화할 가능성을 내포한 정부 법안에 대한 견제 의도가 있었으므로 정당성이 없지도 않았다. 일부 언론인들은 이 사건이 핀란드 언론계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언론계 관점은 국가 안보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와 취재·보도의 자유를 강조하는 쪽이었다.

1) 원문기사는 다음과 같다. Tilaajille (2017, 12, 16). Salaisuus kallion uumenissa—juuri kukaan ei tiedä, mitä tekee Puolustusvoimien Viestikookeskus, mutta nyt HS: n saamat asiakirjat avaavat mysteerin. (Helsingin Sanomat), URL: <https://goo.gl/QWq3es>. 해당 내용을 소개한 월레(YLE)의 영문 기사는 다음 URL을 참조. URL:<https://goo.gl/XvwKYq>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핀란드 정부는 추가 보도를 적극적으로 막았다. 해당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나 시설에 대해 언급하는 대신 기밀문건 유출과 공개의 위법성을 문제 삼았다. 국립수사국(NBI)은 1차 조사 끝에 사건을 비공개 조사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고, 정부와 언론사도 이를 받아들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신문사는 애초 계획했던 기사 보도를 전면 중지했고, 당사자들에게는 함구령을 내렸다. 현재 핀란드 정부 수사당국은 취재기자 두 명과 당시 편집국장의 국가기밀 유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 3. 총리는 ‘앵그리 이메일’로 의혹 보도에 대응했다

2016년 벌어진 이른바 ‘시벨라 게이트(Sipilä Gate)’ 논란도 언론 취재 활동이 국가 반론권과 부딪힌 사례다. 현 핀란드 총리 유하 시벨라(Juha Sipilä)는 성공한 기업인 출신 정치인이다. 1996년에는 핀란드에서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린 납세자였고, 2016년에도 연 소득 및 투자수익 37만 유로를 올려 다른 정치인을 훨씬 앞질렀다. 그의 아들이 지분 5%를 소유한 기업에 정부 기관이 투자한 사실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기업 활동을 기반으로 정치에 진출한 배경 탓에, 시벨라 총리의 재산 관련 문제는 핀란드 언론인들에게 주요 관심사였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정부 소유 광물개발회사 테라파메(Terrafame)가 있다. 2016년 정부가 공적자금 100만 유로(한화 12억 원)를 투입한 지 보름 만에, 이 회사는 시벨라 총리 일가 소유 기업과 50만 유로짜리 계약을 맺었다. 월레는 계약 시점을 문제 삼으며, 총리가 이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를 탐사보도로 지적했다. 그런데 이 보도가 나간 직후 취재 기자와 총리 간에 이메일 ‘설전’이 벌어졌다. 보도 두 시간 전 기자는 반론이나 해명을 담기 위해 총리에게 연락했지만 그는 답장하지

않았다. 리포트가 방송에 나간 뒤, 총리는 “이미 큰 타격을 입었다”며, 어떤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겠다고 썼다. 그 뒤 취재진과 이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총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했다. “정당한 반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언론사의 편향성이 우려스럽다”, “저널리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취재다” 등을 주장하면서 “월레를 전혀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덧붙인다. ‘친인척 특혜 의혹’이 ‘언론 자유 침해’로 옮겨가게 된 배경이다.<sup>2)</sup>

결론을 미리 이야기하면, 이 사건으로 월레 기자 두 명이 퇴사했다. 총리가 의혹을 부인하며 항의하자, 편집국장은 정부 차원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총리 의혹과 관련된 언급을 사실상 차단했다. 시벨라 총리는 ‘반론’하는 대신 핀란드 행정부 내 통제기관인 사정관(Chancellor of Justice)에 판단을 의뢰했다. 이와 별도로 핀란드 의회 옴부즈만(Parliamentary Ombudsman)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sup>3)</sup> 몇 달 전인 2016년 5월, 시벨라 총리가 언론자유 날 기념식에서 했던 발언이 무색한 대응이 아니었을까. “좋은 행정(governance)이란 곧 개방성과 투명성을 의미하고, 시민은 이를 요구해야 합니다. 시민, 정치인, 그리고 공기관은 모두 독립 언론 및 전문적 언론에 주목합니다. 우리에게 사실과 정확성에 기반한 좋은 저널리즘이 필요합니다.”<sup>4)</sup>

핀란드 정부 사정관은 조사 보고서에서 총리를 포함한 공직자가 “공권력 관련 언론 보도를 제한, 금지하거나 조종하려 들었던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총리가 당시 감정적인 표현을 쓰긴 했어도 “언론에 영향을 줄 생각이 있던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 사안의 경우 시벨라



2) 최원석 (2016. 12. 21.), 언론사에 ‘앵그리 이메일’ 보낸 핀란드 총리. <기자협회보>. URL: <https://goo.gl/wkZPM>

3) 공영방송 월레(Yle)는 외부 자문위원을 통해 총리 관련 보도에서의 정부 대응을 평가했다. 관련 내용은 다음 URL을 참조. URL: <https://goo.gl/wW32bE>

4) 핀란드 총리실 웹사이트 (2016. 5. 3.), ‘세계언론자유 날’ 기념식 축사. URL: <https://goo.gl/T2m1YA>

총리 측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와 언론의 시각을 동시에 고려했다며, 양쪽의 가치 가운데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의 의무감에 특히 무게를 뒀다. 이 와 별개로 의회 ombudsman은 총리 일가가 수익을 올린 일에서 공직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이른바 '시벨라 게이트'로 불린 이 사건 이후 핀란드의 언론 자유 지수는 세계 4위(2018년 기준)로 떨어졌다.<sup>5)</sup> 핀란드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위를 차지해왔다.

#### 4. 언론 자유도 끌어내린 핀란드 정부의 대응

앞에서 소개한 두 사건의 공통점은 언론의 대척점에 국가 및 국가 기관이 있다는 점이다. 또 핀란드 정부가 언론 보도에 아주 예민하고 공격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요구하기 보다 직접 조치에 나섰다. 보도 내용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을 신속하게 (때로는 과도하게) 전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결과적으로 언론에는 큰 부담을 줬다. 해를 이어 터진 사건에, 핀란드의 언론 자유는 큰 상처를 입었다.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 환경을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언론인들은 이제 핀란드가 언론 자유국인지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다.

2017년 헬싱키 사노맛 사례는 핀란드 국방부 산하 정보센터의 임무를 폭로하는 기사였다. 10년 된 기밀문서를 바탕으로 해당 기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공개하고, 최근 핀란드 정부가 추진 중인 정보법(intelligence bill)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핀란드 언론은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새로운 법안이 가질 위협성을 비판했다. 새 법안이 한국의 '국정원'과 같은 기관인 SUPO(Finnish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에 온라인 정보수집 및 해외정보 수집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러시아를 포함한 안보 위협과 관련 정보 수집이 그 대상이긴 했지만, 언론은 정부가 온라인 정보수집을 통해 일반 핀란드 시민들까지 감시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의심했다.<sup>6)</sup> 이 법안은 핀란드 정부가 안보위협에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privacy) 및 신속심사(fast-track approval)와 관련한 헌법 일부까지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의회에 법안 통과를 요구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유를 댔다.

“핀란드 안보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긴급한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sup>7)</sup>

'시벨라 게이트'의 경우 안보 문제는 아니지만, 총리 일가의 특혜 의혹을 캐내는 것은 국가 기관의 투명성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언론이 확인하려 했던 대상은 사업에 관심 많은 시벨라 총리 개인 뿐만 아니라, 정부 기금으로 살려낸 공기업의 부도덕한 운영 행태이기도 했다. 몇 달 동안의 조사

5) Reporters Without Borders(국경없는 기자회), 2018 World Press Freedom Index 참조. URL: <https://goo.gl/cMXiTb>

6) Yle (2017, 4, 19.), Finnish intelligence to get broader online surveillance powers. URL: <https://goo.gl/ejMq2J>

7) Reuters (2018, 1, 25.), Finnish government calls for urgent approval of intelligence bill. URL: <https://goo.gl/idhfU5>

로 총리가 해당 계약 체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를 검증하려 한 언론의 문제 제기는 정당했다. 다만 헬싱킨 사노맛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제도를 통한 반론이나 해명 대신 언론사에 직접 대응했다. 언론 자유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위의 보도에 대응할 방법은 없었을까? 이와 관련해 이재진(2004)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반론권은 무기대등의 원칙에 따라 개인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언론에 대해서는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음으로써 언론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하여 단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기사의 사실적 내용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언론의 자유와 동시에 개인적 기본권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장치로 여겨져 왔다.”<sup>8)</sup>

두 사례를 살펴보면, 언론이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사안을 다룰 때, 핀란드 정부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응은 그 내용에 관한 반론부터 시작되었어야 한다. 반론과 해명 대신 이뤄진 즉각적인 사법적 조치와 감정적 반응은 어떤 결과를 낳았나? 핀란드 정부 대응은 기자와 언론사의 취재 활동을 전면적으로 막았고, 이는 언론 자유 침해라는 논란까지 낳게 되었다.

## 5. 나가며: 한국 언론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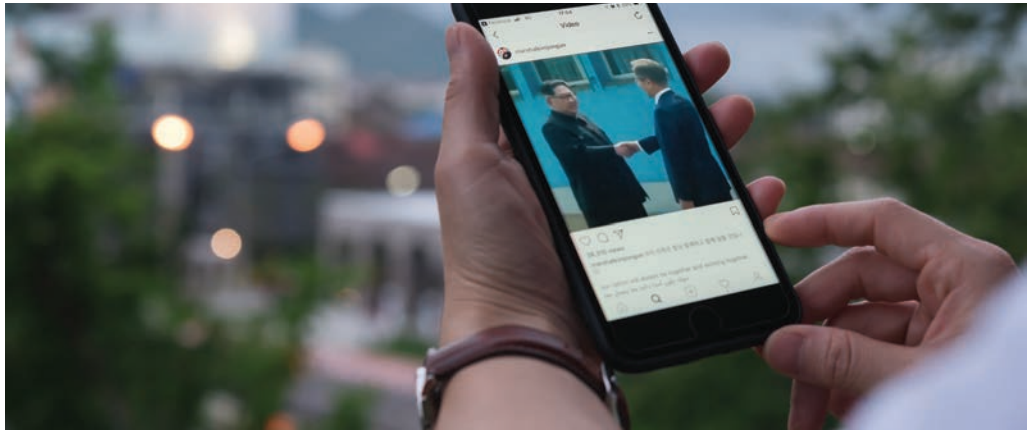
이 글을 쓰면서 국가 반론권 과보호 문제, 국가보안법 관련 피해자 구제, 더 나아가 남북통일이 되었을 경우 북한 지도자의 인격권 문제 등 여러 고민이 떠올랐다. 핀란드의 사례를 참고해 한국 언론에 제기하고자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를 보도할 때, 언론 자유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또 국가가 이로 인해 받을 피해가 있으면 그 반론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

한국 언론은 그동안 특히 ‘안보’ 문제에서만큼은 객관적이기보다 정부 편향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왔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국방이나 대북 정책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았고, 특히 이념 문제는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울타리에 갇혀 다뤘다. 국가 안보 관련 사안에서 스스로 활동 범위를 축소한 탓에 국정원의 초법적인 활동을 감시하지 못했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같은 범죄에 결과적으로 동조했다. 방위산업체 비리, 류경식당 집단 탈북, 북한 내 권력 투쟁과 숙청 보도는 어땠나? 언론은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내용은 건드리지 않고, 국가가 반론하지 않을 만큼만 비판했다.

정반대의 양상도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 일부 언론의 대북정책 관련 보도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지난 5월 29일 청와대는 조선일보와 TV조

8) 이재진 (2004). 정부의 반론권 이용 현실과 쟁점. <관훈저널>, 45(4), 29-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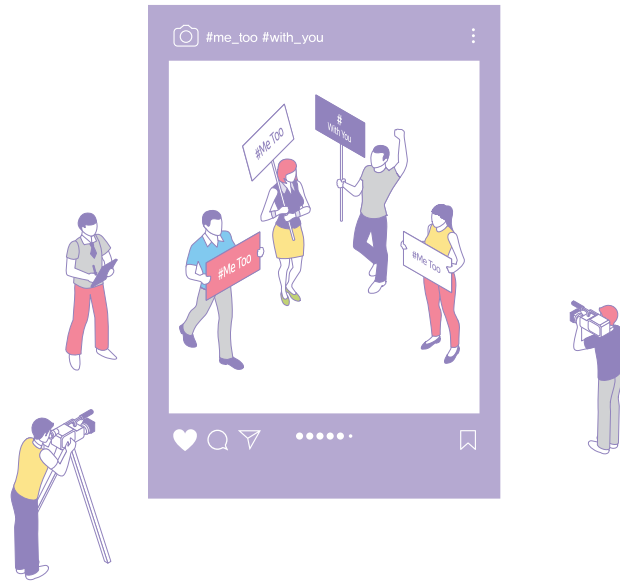
선의 오보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sup>9)</sup>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비수 같은 위험성을 품고 있는 기사들”이라고 말했다. 두 언론이 잇따라 정부 정책에 부담스러운 추측성 보도를 내놓자 직접 ‘반론’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편집국장, TV조선 보도본부장 출신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보다 아니다 판단하는 기관은 사법부 혹은 준사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다. (보도 내용이) 오보라면, 국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오보라고 강하게 어필하고 법적인 절차에 돌입하면 된다. 최고권력기관인 청와대가 오보를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sup>10)</sup>

이런 사례를 통해, 한국 언론과 국가 기관이 각자 목소리를 내기 위해 어떤 식으로 충돌을 피하는지 가늠해볼 수 있다. 언론중재기구가 없는 핀란드에선 정부가 언론사에 직접 대응할 수밖에 없었지만, 한국 정부는 중재 기관이 있는데도 직접 대응했다. 청와대가 언론중재 혹은 방송통신심의 위원회를 거쳐 공식적인 반론권을 행사했다면, 언론사는 더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물론 국가가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법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이같은 직접 대응이 한국 정부에는 더 효율적인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와 별개로, 한국 언론이 제도에 기대 그 정당성과 윤리를 확보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하는 지점이 아닐까.

끝으로 언론중재제도가 하게 될 역할을 전직 기자의 관점에서 제안해 본다. 남북관계가 아주 나아져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적대적인 대북인식이 사라지면 한국에게 ‘안보는 무엇이 될까? 새로운 안보 개념이 자리잡을 때, 언론은 무엇을 보도하고 정부는 또 어떤 관점에서 대응하게 될까? 이런 변화 속에서 언론중재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

9) 기자협회보 (2018. 5. 29). 청와대 '조선일보·TV조선 오보' 작성 비판 URL: <https://goo.gl/wdrW6U>

10) 저널리즘토크쇼J 1회 (2018. 6. 17). 한국 저널리즘 이것이 문제다. <KBS>, 37분 40초~38분 50초 URL: <https://goo.gl/F4YHzR>



2018년 국내에서 미투운동이 시작되고  
미투보도가 확산되면서 우리는 인격권 문제를  
함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언론중재」 여름호에서는 미투 이후  
피해자 인격권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저널리즘 윤리와 보완돼야 할 법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 미디어와 인격권 제4권 제1호 발간

ISSN 2465-9207

## 미디어와 인격권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 [기획논문] 현 미디어 법제 진단과 개선방안

정보기본권 신설 동향과 지향  
-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헌법은 어떻게 수용하여야 하는가? -  
정철운

데이터 혁신 시대를 위한 정보기본권 연구  
박기주

### [연구논문]

저작인격권의 역사적 기원  
윤권순

### [판례평석]

범죄사건 보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검토  
- 대법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  
류영재

제4권  
제1호  
2018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ctivation Commission

언론중재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에 대한  
심도있는 학술적 논의를 위해  
<미디어와 인격권>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